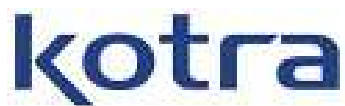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뉴질랜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7
2. 주요 산업 동향 /9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9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9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1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3
주요인증제도 /27
지적재산권 /29
관세제도 /29
대한수입규제동향 /30
통관운송 /32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4
- 외국기업 투자동향 /41
- 우리기업 투자동향 /44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7
- 진출형태별 절차 /47
- 투자입지여건 / 5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2
- 조세제도 /5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7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59
- 2. 물가정보 /60
- 3. 바이어발굴 /61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63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66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7
- 7. 이주정착 가이드 / 68
- 8. 출장가이드 /73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뉴질랜드 (New Zealand)
위 치	대양주 남단
면 적	270,534 km ² (남한의 2.7배) (북섬 11.6만 km ² , 남섬 15.1만km ²)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 (1월 평균 20도, 7월 평균 11도)
수 도	웰링턴 (Wellington)
인 구	4,249 천명 (07년12월)
주요도시	Auckland(130만), Christchurch(35만), Wellington(45만), Hamilton(13만)
인 종	유럽인 250만(70%), 마오리 52만(15.8%), 아시아인 (7%), 폴리네시아인 (6.5%), 기타 (0.7%)
언 어	영어, 마오리어 (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 약 51% ('86년 73%), 비기독교 5% (86년 1.4%) -성공회 14%, 가톨릭 13%, 장로교 10%, 감리교 3%
건국일	1840년 2월 6일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국가 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 상	Helen Clark (노동당 당수), 2005.9.17 총선에서 승리, 3년간 3기 연속 재집권 성공, 다음총선예정: 2008년 9월

나. 경제지표

GDP	US\$ 127,450백만 ('07추정)
경제성장률	3.1% ('07 추정)
1인당 GDP	US\$ 28,284 ('07추정)
실업률	3.5% ('07년 3/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	1.8% ('07년 3/4분기)
화폐단위	NZ Dollar (NZ\$)
환 율	NZ\$1 = US\$0.76 (2007년 12월 기준)
외 채	US\$ 50,018백만 ('07 추정)
외환보유고	US\$ 17,976백만('07 추정)
산업구조	1차 산업(6.7%), 제조업(14.9%), 전기수도(1.8%), 건설(4.8%), 도소매숙박(16%), 교통통신(10.5%) 금융-비즈니스 서비스(25.3%), 사회 서비스 (11.7%), 기타(8.3%)
교역규모	US\$ 580억 (수출 US\$ 281억, 수입 US\$ 299억)('07 추정)

다. 주요 교역품목

수 출	낙농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라. 한-뉴질랜드 관계

체결 협정	대사급 수교 ('62),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67.7), 어업협정('78.3) 국제운수 소득 면세 협정('78.12), 이중 과세 방지협정('81.11) 항공협정('93.8), 사증 면제협정('94.8), 취업관광사증 협정('99.5) 형사사법 공조협정('00.3), 범죄인인도조약 ('02.4), 경찰협력약정 체결('06. 6)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 671백만, 한국 수입 US\$ 894백만 ('07)
교역 품목	한국의 수출: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한국의 수입: 목재, 펄프, 피혁, 쇠고기
투자 교류	우리 나라는 2006년 9월 기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총 219건 US\$ 124,783천 규모(총 투자 기준)을 투자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치즈 제조를 중심으로 식품 제조와 전기 및 전자, 도소매업 등 56건 US\$ 37,460천의 대한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교 민	2006년 3월 실시한 인구 통계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 교민은 모두 30,792명으로서 2001년도 조사시의 19,096명에 비해 61.8% 증가한 수치를 보임. 이는 뉴질랜드 내 아시안 인구 중 중국(147,570명)과 인도(104,58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며 전체 인구의 약 0.7%를 차지하는 비율임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조직

1) 행정부

뉴질랜드는 연방이 아닌 단일국가 (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 (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음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음.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 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음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 행정조직은 12개 Region, 15 개의 City, 59개의 District (74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2) 사법부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금까지 최고 상고심은 영국 상원 산하의 추밀원(Privy Council)이었으나 2003년 10월14일 이를 청산하고 자체 대법원(Supreme Court)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음. 이는 1840년 와이탕이 (Waitangi) 조약에 의해 영국 식민지가 된 이후 무려 1백60년 만이며 2004년 7월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음

뉴질랜드의 사법제도는 우리와 비슷한 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이 있으며 주요 지방에 소재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있고, 항소심으로서 고등법원(High Court)이 있으며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그 위에 위치하고 있음

지방법원은 사실심리를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고등법원은 쌍방 주장의 법적 원리를 분석해 어느 일방이 그 사건에서 법적 우위에 있는지를 판결함. 상소법원은 재판에서 패한 측이 하위 법원 판결이 법적 혹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들어 판결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건을 다룸. 이 외에 특정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음.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음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음.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됨. 우리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 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의 기능인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3) 의회

단원제 의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고 총선은 3년 마다 실시되고 의원 정수는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원 120명 가운데 지역구에서 67명, 정당투표에 의한 의원(전국구)은 53명으로 이루어지며 2005년 9월 17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50석을 얻은 노동당이 99년 이후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음

의원 선출은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1890년 이후 오랜 정당 정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초기에는 자유당과 혁신당이 집권을 한 바 있으며 현재는 노동당과 국민당(자유당과 혁신당 통합)이 교차 집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1년 이상 거주)는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며 비례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 에게 한 표씩을 행사함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 (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음

나. 정치제도

1) 정치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가 겸임하는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국가원수는 뉴질랜드 각의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며 임기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 하는 형식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Anand Satyanand(최초의 유색인 총독)가 2006년 8월 취임함

2)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3년 마다 총선이 있고 현재의 집권당인 노동당은 소수당과 연립으로 2005년 9월 17일 총선에서 승리하여 지난 99년 11월부터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음

선거권은 만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와 1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영주권 보유자에게 부여(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영주권자 제외) 에게만 부여됨

3) 의회 민주주의 전통 유지

1852년 영국의 의회는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함으로써 뉴질랜드 의회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된 바 있으며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바 있음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음

4) 의회구성 (Parliament 또는 House of Representatives)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비례대표제로 구성되어 있고 의석 총수는 120석(지역구 67석, 전국구 53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식 소선거구제에서 92년 9월 및 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지역 비례혼합 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칭MMP)를 도입하였음

정당별 득표 및 의석확보현황(2005년 총선결과)

정당명	정당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의석
Labour Party	935,319	41.10	31	19	50
National Party	889,813	39.10	31	17	48
New Zealand First Party	130,115	5.72	0	7	7
Green Party	120,521	5.30	0	6	6
Māori Party	48,263	2.12	4	0	4
United Future New Zealand	60,860	2.67	1	2	3
ACT New Zealand	34,469	1.51	1	1	2
Jim Anderton's Progressive	26,441	1.16	1	0	1
기타	29,828	1.30	0	0	0
총계			69	52	121

자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www.elections.govt.nz)

5) 국회 조직

- 의장 (Speaker): Jonathan Hunt (노동당)
- 사무총장 (Clerk of the House): David McGee
- 정무장관 (Leader of the House): Michael Cullen
- 14개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 Commerce / Education and Science / Finance and Expenditure /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 Government Administration / Health / Justice and Electoral / Law and Order / Local Government and Environment / Maori Affairs / Primary Production / Regulations Review / Social Services / Transport and Industrial Relations

6) 정당 제도

양당체제로 운영되며 여타 군소정당이 있고 지난1996년 10월 총선에서 비례대표제(MMP)가 도입되어 국민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던 양상에서 탈피, 군소정당과 연계한 연립정부 구성이 계속되고 있음

정당별 주요 정책으로는 노동당의 경우 중도 좌파성격이며 국민당은 중도우파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외에 연합당은 강한 좌파 성격을 띠고 있음

각료 명단 (2007년 11월 5일 기준)

구 분	장 관 명	부 처 명
국무위원	Helen Clark Michael Cullen Jim Anderton Phil Goff Annette King	총리, 문화, 예술 부총리, 재무, 고등교육, 와이탕이 조약, 법무장관, 협상 농업, 수산업, 임업, 검역 국방, 교정, 무역, 군축 법무, 경찰, 교통
	Pete Hodgson Parekura Horomia Chris Carter David Cuncliffe Trevor Mallard	경제, 고등교육, 과학/기술, 연구 마오리족 교육, 소수민족, 보건, 통신 /IT 환경, 노동, 방송, 국유사업
	Ruth Dyson Lianne Dalziel David Parker Nanaia Mahuta Clayton Cosgrove	사회복지, 고용, 노인, 지역사회/의용 상업, 식품안전 국무, 에너지, 토지 세관, 지방정부, 청소년 이민, 체육 / 레저
	Rick Barker Damien O'Connor Steve Chadwick Maryan Street Shane Jones	내무, 민방위, 법정, 재향군인 관광 보존, 여성 ACC(사고보험처리기관), 부동산주택 건축
비 국무위원	Judith Tizard Harry Duynhoven Luamanuvao Winnie Laban Mahara Okeroa Darren Hughes Winston Peters Peter Dunne	소비자 교통안전 태평양도서 정무 통계 외교, 인종 예산 * First 당 * United 당

주: *** 국무위원(장관의 직함이 부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자료원: 내각부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주요 이슈

양국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특히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부재하고 공산품의 수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교적 문제가 되는 이슈는 없는 편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유력품목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 및 현대의 휴대폰 등 일부 품목만이 인지도와 진출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측에서 협상 우선 순위에 밀려 서두르지 않고 있으나 뉴질랜드 측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FTA 협상 제안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주한 대사의 우리나라의 관련기관 방문 및 각계인사 접촉 그리고 우리나라 의회, 언론계, 국책연구원 인사들의 자국초청을 확대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다자간 무역 라운드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 및 서비스 협상에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개방 일정 및 수준을 더욱 단축하고 확대하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2002년 7월 25일 1차 한-뉴 개별 협상) 하고 있음. 서비스 분야에서는 뉴질랜드가 한국의 법률, 교육, 시청각, 건설, 유통,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건축,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의 개방과 조산 및 간호 서비스의 진출, 통신, 건설,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한 바 있음

2003년 7월 한국을 방문,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06년 12월 우리 대통령의 국민방문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합의함. 2003년 9월 13일 멕시코 Cancun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에서도 뉴질랜드는 미국 등 케언즈 그룹의 일원으로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을 주장,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음

2006년 7월 럭비 경기장에서 한국산 굴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현재 한국산 굴에 대해 수입이 잠정 금지되어 있음. 수입된 한국산 냉동 굴을 조리하지 않고 생굴처럼 먹은 것이 사고의 발단이며 조리하지 않고 생굴처럼 제공한 현지 캐터링 업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한국산 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짐.

나. 우호적인 대한 협력관계 유지

뉴질랜드는 한국전 참전 국가로 정치 외교분야에서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한 경제 및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경제성장으로 대한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음

99년 7월에는 뉴질랜드 최초의 여성 총리 Jenny Shipley가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동년 9월 개최된 APEC 21개국 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자격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바 있음. 현재의 총리인 Helen Clark(2002년 7월 재집권)도 2001년 5월 한국을 방문, 정상 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3년 7월 24일~28일간 한국전쟁 정전협정 50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 바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다. 교역규모 및 무역구조

양국교역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97년 기준 양국 교역량은 US\$10억에 달했으나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회복하였음

2005년 우리나라의 대뉴 수출은 US\$ 670 백만으로 8.1% 증가하여 뉴질랜드의 8대 수입 대상국이었으며 수입은 US\$ 891백만으로 1.3% 증가했으며 뉴질랜드의 6대 수출 대상국이었음. 2006년 대뉴 수출은 US\$ 673백만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하고 수입은 US\$ 967백만으로 전년동기비 8.6% 증가함. 2007년 10월 현재 대뉴 수출 금액은 US\$666 백만으로서 뉴질랜드의 7대 수입대상국임

라. 교역품목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목재와 낙농 제품 그리고 육류 등 1차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은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는 보완적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목재와 원목, 알루미늄, 양피, 펄프, 카세인, 치즈, 어류, 가축, 소고기, 양모 등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자동차, 타이어, 전자통신 제품, 컴퓨터, 종이, 플라스틱 원료, 가전제품, 중장비, 섬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마. 반덤핑 규제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냉장고 및 세탁기, 2005년 1월 오일필터 등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으나 금번 2006년 6월로 냉장고와 세탁기 품목이 5년간의 규제기간이 종료되고 덤핑제소 업체의 추가 제소가 없어 반덤핑 규제가 해제됨. 또한 오일필터의 경우 2006년 12월 뉴질랜드의 현지의 생산업체가 문을 닫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덤핑 규제가 해제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반덤핑 규제 해당 품목은 없음.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성장률

2000년대 초 수년간의 호황 이후에 경기순환적인 경기 침체 및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05년 2.5%로 둔화된 경제성장률이 '06년에는 1.7%로 추가 하락하였음 ('02년 4.6%, '03년 4.2%, '04년 4.0% 등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임). 그러나 국제 낙농제품의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고 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으며 기업들도 사업 신뢰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저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07년에는 실질 경제성장률 3.1% 대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나. 인플레이션

2006년 3.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 2007년에는 2.5 %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05년 12월 이후 유지된 기준금리(OCR) 7.25%가 2007년 들어서 네 차례 각각 0.25%씩 인상되어 8.25%가 됨에 따라 기준금리제가 도입된 1999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난 9월 13일 정기 금리조정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대로 2% 이내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과 최근의 소비자 및 기업 신뢰 지수가 회복됨에 따라 경계를 낮추지 않고 있어 당분간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 환율

지난 7월 24일 뉴질랜드 달러는 미달러 대비 NZ\$0.78을 기록함으로써 1985년 환율 변동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뉴질랜드의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려는 국제자본의 유입에 따른 결과임. 그러나 8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하면서 9월 중순까지 환율이 10% 이상 하락하여 한때 NZ\$0.70까지 떨어졌으나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11월에 다시 반등하여 NZ\$0.76수준으로 회복됨. 향후 뉴질랜드 기준금리의 변동 여부 및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환율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NZ\$0.68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라. 경상수지

무역 및 소득수지 적자로 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커진 경상수지 적자 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06년 GDP의 9.4%로 '05년의 9%에 이어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임('05년: 미국 6.5%, 호주: 5.3%, 영국: 3.4%). 2007년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상수지적자는 주요수출품인 낙농제품의 국제 가격 급등 등의 수출 호조 요인으로 인해 축소되어 8.2%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에는 7.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마. 수출

'07년 10월 현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67% 가량 증가한 US\$ 260억불로 인접국인 호주가 최대 수출대상국임. 호주를 비롯 전통적인 최대 교역국인 미국, 일본과 중국, 한국, 영국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15% 증가하여 '01-'06년 평균 신장률 15%를 이어나가며 US\$9억 불, 4위의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잡음.

최대 수출품인 치즈, 분유 등 낙농제품이 US\$ 29억불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며 다음이 육류제품(소, 양), 목재류 순으로 수출됨. 호주에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 원유, 금 등이 수출됐으며 낙농품은 필리핀, 일본, 호주 등에, 양고기는 유럽, 냉동 쇠고기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주로 수출됨.

바. 수입

'07년 10월 현재 US\$29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함. 주요 수입국을 보면 호주가 US\$ 38억불, 21.3%의 비중을 나타내며 1위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31%의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US\$ 23억불의 수입을 기록하여 미국, 일본을 제치고 2위의 수입국 위치를 유지함. 중국에서의 수입은 PC, TV 등 전기, 전자(34%), 의류(18%)가 주종이며 최근 들어서는 철강, 플라스틱, 제지류 수입도 증가함.

수입 최대 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연료로 전체의 12.22%인 US\$ 38억이 수입됐으며 다음이 컴퓨터 등 기계류 제품이 US\$ 29억이며 자동차는 US\$ 22억으로 전년대비 25.15% 증가함.

2. 주요 산업 동향

가. 뉴질랜드 산업구조 및 특성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로서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5%가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림면적은 전 국토의 28%이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음. 목축업 이외에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양고기, 소고기, 양모, 낙농 제품 및 가축 등을 생산하여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 수출을 해 오고 있어 수출 주종 품목을 이루고 있기도 함

1970년대 이후에는 양과 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사슴, 염소, 타조, 라마 등의 사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원예작물도 수출품목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수산업의 증가가 눈에 두드러지고 있으며 굴, 홍합, 전복, 대형 새우 등을 양식하는 양식업도 유망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

이들 산업은 수출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GDP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함

뉴질랜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이 세계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해외시장 수출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은 농림수산업인 1차 산업이 6.7%, 2차 산업인 제조, 건설 발전 분야가 19.2%, 그리고 서비스업이 66.5%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부문 서비스 (4.5%) 및 기타 분야가 차지하고 있음

산업	GDP 비중 (%)
1차산업 (농림수산업)	6.7
2차산업 (제조업)	21.6
서비스업	63.3
정부 부문	4.3
기타	4.1

농업 등 1차 산업 이외에 관광업은 외화 획득의 원천으로 GDP의 9.3%를 차지하면서 15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추 산업이며 농업(GDP의 6%)과 함께 2대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나. 주요 경제 및 통화 정책

2004년까지 2% 대를 유지해오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5년도에 3.0%, 2006년도 3.4%를 나타내자 2007년도에는 이의 3% 이내 억제가 당면 경제 정책 과제로 떠오름.

중앙은행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2007년 6월 현재 8%에 이르나 아직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3/4분기에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지의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2005/2006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 흑자가 US\$77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OECD 최상위에 속하는 개인 소득세(19.5%~39%) 및 법인세(33%)를 인하하라는 거센 압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부터 법인세를 30%로 인하하기로 결정함.

정부 지출의 주요 관심분야는 교통, 의료/보건 및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당분간 재정 흑자 상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 주요 산업정책

주요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 등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농림부(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로서 1998년 3월 1일부로 뉴질랜드 농업부와 임업부가 통합되어 새로 출범하였으며 주요 임무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동물, 식물의 건강과 안전 및 자원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음. 이러한 산업구조는 농업 등 1차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 제조업은 적은 인구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중공업이나 경공업 등 제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생명공학, 정보 통신, 영화분야 등 환경 훼손이 적고 자국의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과거 국민당 시절에 관세인하 및 조기 철폐정책 추진에 따라 많은 빈약한 구조의 제조 업체 들 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음. Toyota, Ford, Honda, Mazda 등의 자동차 조립 공장도 자동차 수입 관세 철폐로 97년 이후 4개 공장이 모두 폐쇄되어 약 2만 여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기도 했음.

라. 주요 산업동향

뉴질랜드 경제는 2001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활력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말까지 세계 적인 경기침체와 테러 등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변수 속에서도 제조업과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4%를 넘어선 바 있음. 성장 동인은 수출부문에서 낙농제품, 육류, 목재 등 주력 수출품목이 10% 이상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내수부문에서는 주택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들어 이민자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이 2.5%로 내려 앉았으며 2006년 말에는 1.7%까지 하락함. 그러나 200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내수경기의 활황 및 국제 낙농제품 시세의 급등에 따라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에는 2.6%에서 3.1% 정도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마. 광물 및 에너지산업

뉴질랜드 에너지 산업은 뉴질랜드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8천명의 고용인력으로 총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음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에너지 자급률이 70%에 달하고 있고 주요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보면 석유 48%, 전기 27%, 석탄 7%, 가스 8% 등이며 풍력 및 지열 등 나머지 재생 에너지가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음

전력생산은 과거 수력발전이 전력공급의 80%이상을 차지한 바 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4년 기준 64.7%이며 화력발전(25.2%), 지열 발전(6.3%)과 기타(3.8%)로 구성되어 있고 수력 발전은 지형 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 섬에 집중되어 80여 개의 댐이 있으며 북 섬에는 중부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편중되어 있음. 연간 발전량은 41,622기가 와트이며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46%), 전기(26%), 고체 연료 (15%), 가스 (10%), 지열(3%)임

전력 사용은 인구의 3/4이 집중되어 있고 산업 밀집지대인 북 섬에서 많으며 남 섬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공급 받고 있으며 발전소는 수력발전 30개 지역에 124개 있으며 화력 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있음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 섬의 MANAPOURI발전소로 600MW급으로 연간 3,887백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 섬 중부의 지열 발전소는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OKAIE 지역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건설되었음

석유는 타라나키에서 생산되며 전체 소비량의 46%를 자급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마우이 유전을(82%) 비롯한 6곳에서 생산되어 가정용, 석유화학공장,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며, 일부 수출도 하고 있는데 NEW PLYMOUTH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음

금의 생산량은 연간 12톤(US\$25억)이며 해밀턴(5387kg), 더니든(4587kg) 및 그레이머스 (2157kg) 세 곳에서 생산되고 있고 은은 해밀턴에서 전량 생산되며 연간 27톤(\$780만)이 생산되며 기타 석탄, 알루미늄 등도 생산됨

뉴질랜드 정부는 에너지난에 대처하고 고갈이 예상되는 Maui이 유전을 대체할 새로운 유전 개발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중반부터 뉴질랜드 최대 에너지 회사 Contact Energy와 정부기업인 Mighty River Power가 공동으로 NZ\$80백만을 투입, 시추 및 개발작업 에 착수할 계획이며 일부 사업은 추진을 시작하였음

주요 유전 매장량, 생산량

유전명	원유매장량	연간 생산량	천연가스매장량	생산량
Maui 유전	34.91Mm3	2.4Mm3	103,012Mm3	3,778Mm3
Kapuni유전	9.76Mm3	0.18Mm3	33,618Mm3	900Mm3
McKee유전	8.23Mm3	0.29Mm3	4,531Mm3	221Mm3
Waihapa유전	3.64Mm3	0.10Mm3	755Mm3	14Mm3
Kupe유전	2.59Mm3	-	7,476Mm3	-

주: Kupe유전은 새 유전으로 97년부터 가동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강수량에 따라 전력생산이 불균형을 이루기도 하며 남 섬의 수력생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2003년 들어서 정부는 10%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 으로 전개해 나간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는 전기료를 인상, 일반 가정은 물론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 2004년 초부터 전력 회사 들은 잇따라 전기료 인상을 단행함

연도별 전력생산은 2004년(9월) 39,310Wh, 2005년 39,273 GWh, 2006년 39,920GWh이며, 수력 및 풍력 생산은 2006년에 22,864 GWh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수 년 간 수력, 풍력 발전 비중이 통상 69%수준이었으나 2005년 처음으로 60%선으로 떨어 졌으며 대신 석탄, 가스 등의 화력발전 비중이 최고조로 상승함.

전력 생산은 Meridian, Genesis, Mighty river power 등 3개 공기업(SOE)과 Contact, Trust Power 등 2개 민간기업이 하고 있음.

주요 에너지 산업동향

Commodity	2003.9	2004.9	2005. 9	2006. 9
Diesel Refined (천톤)	1,855	1,633	1,629	1,669
Petrol Refined (천톤)	1,505	1,570	1,605	1,534
Gas Production (terajoules)	206,831	163,654	163,157	160,452
Crude Petroleum (천톤)	972	790	777	719
Deliveries of Diesel (천톤)	2,188	2,248	2,329	2,364
Deliveries of Premium Petrol(천톤)	506	569	500	473
Deliveries of Regular Petrol(천톤)	1,806	1,846	1,877	1,898
Total Deliveries of Petrol(천톤)	2,312	2,415	2,376	2,371
Geothermal Energy Production	73,614	72,759	75,439	79,539
Electricity Generation (GWh)	37,184	39,310	39,273	39,920

자료원: Statistics New Zealand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인구 대비 넓은 국토와 전국토의 54%가 초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못한 편임.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가 생산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할만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양이 충분하지 못하며 여타 자원으로는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고 있음

석탄은 채굴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의 동력자원이며 30%가 남 섬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석유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천연 액화가스, 합성석유, 원유 생산량은 뉴질랜드 소요량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으며 원유는 사우디 아라비아, UAE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어 북 섬 왕가레이(Wangarei)에 있는 유일한 정유 공장 마르스덴 포인트(Marsden Point)에서 정제하여 사용하며 일부는 해외 수입 제품을 이용하고 있음

천연가스는 Taranaki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대의 탄화수소 자원이나 북 섬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생산량의 절반이 합성석유 같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고 4분의 1은 전력 발전에 나머지는 상업 및 주거지역에 공급되고 있음

개혁 및 개방화 정책의 시행으로 모든 부문의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정부의 규제나 간섭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데 대상은 자연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는 전기 가스 송배전 및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 효율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등을 들 수 있음

특이한 사항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원관리법(Th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주요 현안으로는 매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생산의 확대문제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배출가스 규제로서 뉴질랜드는 교토 협약 체결 국으로 2008-2012년간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되는 입장임

바. 교통, 관광업

운송 부문은 뉴질랜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는 뉴질랜드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구불구불한 지형과 널리 분포된 인구 및 총 길이가 2,011km이나 되는 남북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 교통은 산업 혈액의 효율적인 구축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으며 주요 교역국들과의 교역을 원활하게 지탱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항구와 공항으로 연결 되는 약 93,000 킬로미터의 통합 도로망과 4,200 킬로미터의 철도가 건설되어 있음

많은 초기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관계로 대부분 정부 기관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었으나 8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을 위한 법적 제재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거의 민영화되었음

항공 부문에서도 1983년 이후 효율적인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6년 뉴질랜드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법규가 사라져 뉴질랜드의 주요 3개 공항과 지방 공항들은 유한책임회사로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1998년에는 오클랜드, 웰링턴 국제 공항과 지방 공항의 민영화가 단행된 바 있음

인구 규모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운항 서비스는 뉴질랜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부터 다른 항공사와의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85년 이후 뉴질랜드 정책은 양자간 항공 서비스 협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많은 나라들과 운항 협정을 맺고 있음

뉴질랜드의 철도 시스템은 인구 밀집지역과 3개의 inter-island rail ferry를 연결하고 있으며 90년 10월까지 정부기관인 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다른 민영기업과 더불어 국내 택배 서비스와 승객운송 서비스를 같이 했음. 1993년 9월 핵심 사업은 뉴질랜드 컨소시엄과 해외에 매각되었고 현재 Tranz Rail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

뉴질랜드 대외교역의 약 90퍼센트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당량이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음. 뉴질랜드는 항만개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항만기술 도입을 통해 각종 비용을 낮추어왔으며 1998년 5월의 개혁으로 거의 60퍼센트의 노동력을 감축시킨 바도 있음. 이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선박의 하역 시간도 반으로 줄었으며, 뉴질랜드 수출업자들은 낮아진 화물 운임률을 가지고 협상하여 1994년 11월 정부는 1995년 2월부터 외국 선박의 뉴질랜드 연안에서의 무역을 허가 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수송비용을 감소시키고 제조업과 농업 제품의 해안 수송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뉴질랜드는 1인 당 항공기 및 파일럿의 보유 비율이 아주 높은 국가중의 하나임. 대형 항공기는 국제 및 국내의 화물과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같은 경비행기들은 농업, 관광 등에 활용되고 있음

AIR NEW ZEALAND를 포함한 총 29개의 국제항공사가 화물과 승객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 지역을 운항하고 있으며 Hamilton, Palmerston North, Queenstown and Dunedin등은 타즈만 해의 횡단에 필요한 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음

많은 수의 국내선은 31개의 공항과 aerodrome에서 출발하며 몇 개의 소규모 항공사가 있는 반면 AIR NEW ZEALAND와 QANTAS는 가장 많은 국내 운행 편수를 가진 항공사임

2001년 9.11 사태로 인해 Air New Zealand는 큰 재정위기를 맞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8억 8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82%를 매각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항공사의 누적적자 심화와 국영 항공사로서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주식시장 상장 및 2003년6월 1억 5 천만 달러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재차 국유화를 단행하였음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 관광산업은 뉴질랜드 주요 성장산업으로서 GDP 기여가 직간접적으로 10%에 달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야외 레포츠 등이 뉴질랜드를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음

2006년 방문객 수는 2백 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가 증가했으며 호주가 903천명으로 전체의 37.5%라는 압도적인 비중이며 다음 영국이 295천명으로 12.2%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111천명으로 4.6%로 미국, 일본에 이어 5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국가/지역별 방문객 현황

(단위: 천명, %)

국 가	2006. 12			2005			2004		
	방문객	순위	비중	방문객	순위	비중	방문객	순위	비중
호 주	903.5	1	37.5	874.7	1	37.0	855.9	1	36.7
영 국	294.8	2	12.2	306.8	2	13.0	283.7	2	12.2
미 국	225.6	3	9.4	214.5	3	9.1	218.3	3	9.4
일 본	136.4	4	5.7	154.9	4	6.5	165.0	4	7.1
한 국	111.4	5	4.6	112.0	5	4.7	113.9	5	4.9
중 국	105.7	6	4.4	87.9	6	3.7	84.4	6	3.6
독 일	59.4	7	2.5	57.5	7	2.4	55.7	7	2.4
캐나다	46.0	8	1.9	42.2	8	1.8	40.6	8	1.7
싱가포르	28.2	9	1.2	29.7	9	1.3	32.9	9	1.4
대 만	27.8	10	1.2	28.5	10	1.2	26.7	10	1.1
총 계	2,421.6		100	2,383.0		100	2,347.7		100
대양주	1,023.4		42.5	985.2		41.6	957.1		41.0
아시아	512.1		21.3	519.6		22.0	529.5		22.7
유 럽	508.8		21.1	513.3		21.7	481.2		20.6
미 주	295.2		12.3	276.2		11.7	276.2		11.8
기 타	69.5		2.9	71.3		3.0	90.2		3.9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사. 농림, 수산업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빈약한 반면 낙농업의 산업비중이 가장 높으며 동 부문은 GDP의 7%,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8%는 협동조합이자 세계 5위의 낙농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폰테라(Fonterra)를 통해 판매 및 수출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뉴질랜드의 낙농업이 경쟁력이 있기도 하지만 주목할 것은 강력한 카르텔인 동 조합을 들 수 있으며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2개의 유가공 업체와 뉴질랜드 낙농청(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임.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뉴질랜드 낙농제품의 대한 수출 통로가 되고 있는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제품 및 원료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려 할 경우 동 기관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가격 및 물량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함

주요 낙농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음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은 매출이나 가공되는 우유의 양에서 세계 10 위권 안에 드는 유가공 업체이며 우유의 경우 내수시장은 생산된 우유의 약 5%에 불과하며 나머지 유제품은 전량 수출되며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이 막강함.

뉴질랜드의 우유생산량은 연간 12억kg이상이며 젖소는 400만 마리로 지난 10년 동안 두 배나 증가했으며 11,500개의 낙농 농가의 평균 젖소 보유는 340마리에 이르고 있음. 뉴질랜드가 생산한 우유의 약 98%는 폰테라 조합에서 취급되며 나머지는 Westland Dairy와 Tatura Foods가 차지하고 있음.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만 칠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 GDP의 7%에 달하는 140억 달러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음

이 외에 염소 젖, 아이스크림, 치즈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수출업자들도 있으며 치즈는 분유, 버터 제품의 뒤를 잇는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3위 제품으로 생산량의 90%가 수출되고 있음

Kapiti Cheeses 주식회사는 소규모 특산품 치즈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200 개의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북 섬 남부에 위치한 공장에서 우유, 염소, 양젖으로 만든 치즈와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고 치즈 대부분은 채식주의자와 Halal 인증을 받은 제품 들임

유가공업계는 부수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뉴질랜드를 유명한 아이스크림 시장의 본고장으로 성장시켰으며 오클랜드의 팁톱(TipTop) 아이스크림 회사는 자사가 개발한 맴피스 멜트 다운 아이스크림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독특한 액화 질소 공정은 가운데가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두 겹의 초콜릿 껍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음

염소 젖 또한 뉴질랜드의 수출 상품으로 인기가 있는데 북 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해밀턴 소재 Dairy Goat Co-Operation 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용 염소 가공유를 생산 하고 있고 5년 전 7백만 불에서 4천만 불로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대만을 중심으로 남미 및 중동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용 분유를 개발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국토의 52%가 목초지로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 등 이상적인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농업과 목축업, 원예산업이 발달해 왔으며 이들 부문은 뉴질랜드 경제 특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사슴, 염소, 타조 등 새로운 가축사육이 도입되고는 있으나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육류와 각종 낙농제품 생산을 위한 양과 소 위주의 축산업이 주류를 이루었음

1970년부터 원예농업도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뉴질랜드 농축산업의 강점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뉴질랜드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자국의 농축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GATT Uruguay Round Agriculture Agreement)가 이행 되면서 농업보조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세계시장을 향한 진입 장벽 해소라며 반기고 있을 정도임

농업과 원예업은 GDP의 약 7%를, 낙농업은 GDP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비중이 15%와 20%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낙농 제품은 사육하는 가축 수에 영향을 받은 가운데 젖소는 1990년 6월 340만 마리에서 2006년 현재는 400만 마리로 증가했음

이외에 사슴 수는 1981년 10만 9천 마리에서 2006년 6월에 160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육우는 95년 6월 520만 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440만 마리로, 양은 1980년대 후반 6500만 마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여 Meat and Wool Innovation Economic Servi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6년 6월 현재 4,000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남.

농림부는 2006-2010년 전망(outlook)에 대한 보고서에서, 육류와 낙농제품 수출은 증가하고 양모 제품의 수출은 약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으나 2003년에 SARS와 미국-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양모 수요가 10%가량 감소한데다 관광 및 외식산업의 후퇴 등으로 육류 소비도 감소하여 뉴질랜드 주력품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으나 2004년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고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또한 지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수출경쟁력을 잃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정도이며 13분기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산물 수출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키위과일의 수출감소와 더불어 금년 들어 원예작물 과 사과 등 여타 제품들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뉴질랜드의 수출 농작물은 밀, 보리, 콩, 옥수수, oat, nashi pears, berry fruit, 화훼, 양파와 야채 등이 망라되어 농가소득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아. 수출통제품목(Producer Board Reform)

뉴질랜드에서 낙농품(dairy) 및 사과와 배 그리고 키위 등 3가지 품목의 수출은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창출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유지 등을 위해 지금까지 관련품목의 생산자 위원회 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 왔음

2006년 6월 기준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천 마리)

지역	양(Sheep)	젖소(Dairy Cattle)	고기소(Beef Cattle)	사슴(Deer)
Northland	526	378	491	9
15	127	122	148	15
Waikato	2,707	1,735	661	127
Bay of Plenty	382	301	117	60
Gisborne	1,834	N/A	305	28
Hawke's Bay	4,227	79	529	107
Taranaki	688	599	129	N/A
Manawatu-Wanganui	6,877	390	702	117
Wellington	2,012	103	176	23
Total North Island	19,547	3,715	3,259	491
Tasman	324	66	46	25
Nelson	N/A	N/A	3	N/A
Marlborough	649	26	68	16
West Coast	78	149	37	48
Canterbury	7,463	656	530	465
Otago	6,008	181	279	193
Southland	5,929	376	205	348
Chatham Islands	N/A	N/A	N/A	N/A
Total South Island	20,551	1,455	1,181	1,096
Total New Zealand	40,098	5,170	4,439	1,587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자. 임업

국토의 약 30%(810만Ha)의 광활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중 640만Ha는 천연림, 170만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목재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현재 목재수입의 60%이상을 뉴질랜드산 소나무(뉴송)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를 미국과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차. 정보통신산업

뉴질랜드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한국과 비교할 경우 첨단 이미지 보다는 내실 있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출시에 이르기까지 저비용의 첨단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산업전반이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 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사업 협력 능력을 경비하고 있음

최근 낙후된 인터넷 통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금년 5월 텔레콤의 독점 구조를 깨고 통신망을 개방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함. 이로 인해 빠르고 값싼 브로드밴드 도입을 위해 기업간 투자와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정부의 이런 조치 배경에는 자국의 낙후된 인터넷 환경에 있는 데, 뉴질랜드의 인터넷 보급률은 인구의 76.3%라는 비교적 높지만 초고속 인터넷인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6.9명으로 OECD 30국 중 22위로 하위에 있으며 이런 취약한 인터넷 환경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많은 비난을 받아왔음

뉴질랜드의 통신환경은 국내외 통신 Gateway를 지원하는 대용량 광 통신망과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어 투자를 위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으며 지난 89년에 처음으로 통신시장을 개방한 이후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여 국영 Telecom New Zealand (한국 KT에 해당)이 1990년 8월에 민영화되어 유무선 통신업이 기업간 치열한 경쟁 체제를 유지 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통신서비스는 메이저인 Telecom New Zealand를 비롯하여 Telstra Clear, Walker Wireless, Ihung 등이 한정된 시장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거대 공룡인 Telecom New Zealand와 경쟁하기 위해 다른 통신 업체들은 통신망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2003년 6월 20일 Telecom New Zealand는 미국의 Lucent Technologies와 CDMA 무선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5년간 Lucent의 Worldwide 서비스 조직(Lucent Worldwide Services)을 통해 027 CDMA 무선망 설계는 물론 구축, 유지 보수 등 네트워크 관리 총괄책임을 맡겨 경쟁사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음

한편 민영화 이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현재 16개의 통신 서비스업체가 국내외 통신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은 Telecom New Zealand 와 Vodafone 등 2개 회사가 시장을 반분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Telstra Clear등이 일부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도 함.

뉴질랜드 인터넷 사용료는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비용인하와 함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OECD국가 중에서도 인구 대비 (1000명 당) 인터넷 호스트와 인구 백만 명당 secure server 보유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뉴질랜드 통계청 (Statistics New Zealand)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ICT 백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rvey)에 따르면 2006년도 뉴질랜드 ICT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규모는 총 NZ\$176억으로 나타났음

뉴질랜드 IT산업은 통신 서비스가 42.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소프트웨어와 개인용 PC 시장 순으로 비중이 크며 특히 통신용 하드웨어의 판매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통신 시장과 IT 산업의 미래는 성숙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부의 예산확충 등 공공부문의 프로젝트 활성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또한 뉴질랜드의 IT산업은 기업은 물론 가정과 학교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나 적은 인구 규모와 높은 PC 보급률로 성숙 단계에 진입해 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큰 폭의 수요증가보다는 IT 수요 증가와 대체 수요에 따른 완만한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은 Telecom New Zealand와 영국계 Vodafone이 양분하고 있는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전체 인구의 92%에 달하는 380만 명에 이르렀으며 최근 Vodafone이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여 이중 절반이 넘는 가입자 수 210만, 5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경쟁사이자 통신공룡인 Telecom New Zealand를 앞서고 있음.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무역협정 체결 국가

현재 체결된 FTA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상호 경제 협력 및 관세장벽 완화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 호주: Australia and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1983년 체결)
- 싱가포르: New Zealand and 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1년)
- 태국: New Zealand and Thai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5년)
- 칠레: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2005년)
- 브루나이: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2005년)

나. 현재 자유무역 협상 중인 국가

- 중국
- GCC (걸프협력협의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홍콩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

□ US\$224억으로 3.2% 증가, 2005년 6.9% 증가에 비해 둔화됨

- 주요 수출국인 호주,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감소, 둔화세인 반면 우리나라(15.4%)와 중국(10.2%)에 수출이 크게 증가함.
- 주요 수출품은 분유, 버터, 치즈 등 낙농 가공품(18%) > 육류(14%) > 목재(6%) > 기계류(4%) > 알루미늄(4%) > 과일(3.8%) 의 순임.
- 주요 수출 시장은 호주(20%) > 미국(13.7%) > 일본(10.7%) > 중국(5.6%) > 영국(4.5%) > 한국(3.7%) 임.
-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 동아시아 지역이 32.1%로 최대 시장으로 부상
 - 최근 들어 EU 시장이 정체(15.1% 차지)인 반면 중국과 함께 중동국가('05년 3.0%, '06년 3.3%)들이 유망시장으로 부상

- 최대 수출품인 낙농품이 11.1% 증가. US\$40.7억으로 총수출의 18.2%이며 다음 육류, 목재류가 각각 13.5%, 6.2% 차지
 - 낙농품은 미국 시장이 7.5%로 가장 크고, 다음 중국이 6.1%를 차지함
 - 육류는 양고기 US\$16억, 쇠고기 US\$12억 규모이며, 쇠고기 주요 시장은 미국 50%, 한국 14%, 일본 10% 순임
 - 전체 목재류 시장은 이룬(20%), 미국(18%), 호주(16%), 한국(15%)이나, 원목만은 우리나라가 52%로 최대 수출지임
- 주요 수출품 중 세탁기 등 기계제품이 US\$12억 규모이며 호주(42%), 미국(21%), 영국(4%) 등으로 주로 서구 국가에 수출
 - 알루미늄은 57%가 일본에 수출되며 미국, 호주, 한국 순임
 - 특산물 중 홍합(US\$1억)은 미국(36%), 스페인(9%), 한국(8%) 순이며 키위(US\$5억)는 일본(31%), 한국(9%) 등에 주로 수출함

나. 수입

- US\$265억(1% 증가)으로 '04년 25%, '05년 13% 대비 급감
 - 주요 수입품은 차량(31억 뉴불) > 원유(28억) > 정유(23억) > 항공기(17억) 임
 - 주요 수입국은 호주(19.6%) > 중국(12.2%) > 미국(12.1%) > 일본(9.1%) > 싱가포르(4.6%) > 독일(4.4%) > 말레이시아(3.3%) > 영국(3%) > 한국(2.9%) 의 순임
 - 네 번째 수입국이던 중국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고 호주에 이어 제2의 수입국으로 부상함.
 - 국가별 주요 수입품으로 호주가 석유제품과 자동차, 일본은 자동차, 전자제품이며 중국은 전자제품, 의류, 가구류 등임.
- 최대 품목인 광물 연료 중 원유가 54%를 차지하며 전년비 29% 증가한 US\$21억 수입
 - 최대 수입 공산품이던 자동차 수입이 19%나 감소, US\$31억으로 PC, 사무기기 등의 기계류에 이어 3위를 차지
 -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 일본 39.5%, 호주 13.0%, 독일 12.0%, 미국 6.5%, 태국 5.6%, 한국 4.2%, 영국 3.9%
 - 백색가전 제외 전자제품군은 중국 23%, 호주 12% 점유율을 보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24%, 22% 감소
 - 제지류는 인쇄용지, 화장지 등이 주로 수입되며 호주 38.9%, 중국 8.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3.7%에 그침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 관

뉴질랜드 경제 호황기인 2002-04년 간 수출의 높은 증가율에 힘입어 양국간 수출입이 연간 US\$ 16억 규모로 성장하였다.

(단위: %)

연도	수출 증가율	뉴질랜드 총수입 증가율
2002	18.4	14.2
2003	34.3	22.2
2004	43.3	24.9

- 2005년 들어 수출이 둔화, '05년 US\$ 6.7억, '06년 US\$ 6.7억으로 각각 8.1%, 0.4% 증가에 그쳤으나 2007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14.8%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은 '05년, '06년 US\$ 9.7억으로 각각 1.3%, 8.6% 증가하였으며 2007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8%의 성장률을 보임.

'07년 1~8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출 비중은 0.19%로 57위를 차지('06년 0.24%, 55위)

(단위: US\$ 백만, %)

구 분 (2007.1~11월)	우리나라 전체		대 뉴질랜드		
	금액	증감	증감	비중	순위
수 출	338,509	14.1	4.5	0.19	57
수 입	322,573	14.4	17.1	0.32	35

주) 수출규모 비교: 파키스탄, 쿠웨이트 US\$ 6.7억, 덴마크 \$ 6.5억, 체코 \$ 5.6억, 페루 \$ 3.6억, 아르헨티나 \$ 3.3억

임산(원목, 펄프) 및 식품(쇠고기, 분유) 자원의 공급원으로서 비중이 높아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교역 구조이다. 감소세를 보이던 적자폭('01년 US\$ 4.7억, 03년 2.8억, 05년 2.2억)이 최근 수출 둔화로 '06년 US\$ 2.9억으로 증가, 07년 11월 현재 US\$1.6억을 기록하고 있음.

나. 무 역

1) 수 출

☐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등이 수출 주력 품목

- 자동차와 산업기계를 포함한 기계류가 US\$ 1.8억으로 전체의 27.7% 차지하며 최대 수출 품목군으로 부상
- 전자전기제품이 및 화학공업제품이 각각 23.6%, 7.0%로 증가하여 2,3위를 기록함.

☐ 단일 품목으로 승용차가 최대 수출품이며 전년동기비 증가한 US\$ 1.6억으로 자동차 수출의 97%를 차지

- 우리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과 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03년부터 수출이 급증세로 반전
- 증감률: '02년 -12%, 03년 130.3%, '04년 30.7%, 05년 136.5%, '06년 39.2

- '06년에 53.2%의 증가율을 보였던 경유가 -44.5%의 감소세를 보이며 US\$44백만으로 3위로 기록됨.
- '06년에 -30.5%의 감소세를 보였던 무선전화기의 수출이 급증하여 '07년 11월 현재 US\$67백만, 55.3%의 증가율을 보이며 2위의 제품군으로 급성장함

對뉴 수출 주요 품목

(단위: US백만, %)

대분류	'06	'07. 1~11월		세분류	'06	'07. 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673	652	4.5	총 계	673	652	4.5
기계류(자동차)	177	181	13.3	승용차	113	116	12.8
전자전기제품	98	109	23.6	무선전화기	49	67	55.3
화학공업제품	106	104	7.0	경유	78	44	-44.5
농림수산물	53	81	64.5	합성수지	43	41	3.7
철강금속제품	68	78	22.8	기타어류	10	42	350.9
광산물	116	46	-60.7	건설중장비	36	39	19.8
플라스틱·고무	25	26	13.1	기타석유화학	21	21	17.9
섬유류	24	22	1.1	인쇄용지	19	18	4.8
생활용품	3	3	-18.8	석도강판	11	15	44.7
잡제품	2	2	54.8	축전지	7	14	116.3

(자료원: 한국무역통계)

2) 수 입

□ 농림수산물이 US\$ 7.6억으로 전체 수입의 85% 차지

- 임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US\$ 3.6억, US\$ 3억으로 총수입의 68.8%를 차지, 농산물은 US\$ 92백만 규모가 수입
 - 임산물중 원목이 US\$ 2.6억으로 단일 품목으로 수입이 가장 많음
- 축산물에선 쇠고기가 1.0% 증가한 US\$ 1.5억으로 가장 크며 치즈 수입이 32.7% 증가하여 US\$ 42백만을 기록함
 - 쇠고기 총수입 US\$ 7.9억중 호주(US\$ 6.2억, 78.8%)에 이은 US\$ 1.5억으로 19.0% 차지('04년 23%, '05년 24.3% 대비 감소)
 - 치즈 총수입 US\$ 1.5억중 23.4%로 최대(미국 17.0%).

□ '06년 증가율이 0.3%로 둔화되었던 농산물은 24.6%의 증가세를 보이며 US\$ 92백만이 수입

- 키위가 22.8% 증가한 US\$ 54백만, 다음 원유가 증가율의 무 변동을 보이며 US\$ 54백만을 기록하였고, 펄프는 US\$45십만에 25.9%증가하여 5위를 기록.

□ 최근 비철금속, 석유제품 등 비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 추세

- 알루미늄 스크랩이 US\$17백만으로 12.3% 증가,
 - 동제품은 '06년 US\$ 16만 규모로 18.7%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12.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기타 석유화학 제품이 13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US\$39백만이 수입됨

對 뉴 수입 주요 품목

(단위: US백만, %)

대분류	'06	'07. 1~11월		세분류	'06	'07. 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967	1,040	17.1	총 계	967	1,040	1701
임산물	329	362	21.2	원목	308	348	25.2
축산물	293	295	10.2	쇠고기	163	152	1.0
농산물	77	92	24.6	키위	46	54	22.8
광물성연료	17	62	254.1	원유	0	54	-
제지연료	59	60	13.6	펄프	41	45	25.9
석유화학	18	39	136.7	치즈	34	42	32.7
비철금속	79	35	-51.3	기타석유화학	17	39	137.8
철강제품	12	22	89.0	단백질	28	35	30.4
가죽모피	19	17	-0.8	고철	12	22	90.1
수산물	18	17	5.0	알루미늄스크랩	16	17	12.3

(자료원: 한국무역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2007년도 수입규제 개요

□ 수입 규제 동향

뉴질랜드는 농업과 축산업 및 임업 등 1차 산업 중심이라는 특징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주요 공산품의 수입 및 자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및 낙농 제품의 수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수입관세 일부 철폐 및 인하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인접국인 호주를 비롯 싱가포르, 태국,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캐나다와는 이와 유사한 무역경제협력협정(TEC: Trade &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들 국가의 상당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혹은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 규제를 하고 있으며 준거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음

□ 2007년도 수입규제 개요

2001년 6월 10일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판정 이후, 2004년 7월 20일 반덤핑 제소된 오일필터에 대해 2005년 1월 14일 최종 덤핑 판정을 받음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기간(5년) 경과와 추가 제소가 없어 2006년 6월에 해제되었으며 오일필터는 현지 생산 공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 2006년 12월자로 규제 사유가 해소되어 반덤핑 규제 해제됨.

2) 대한 수입규제 현황(2007년 12월 기준)

현재 해당 품목 없음

나. 2008년도 대한 수입 규제 동향 전망

2007년도 GDP 성장률이 3.1%로 전망되는 가운데 2008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되어 약 2.8%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향후 12~18개월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경기 과열 및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중앙은행의 경기 억제정책에 따른 것임

현재 8.25%에 이르는 공금리 수준으로 인해 대부분 장기 주택융자를 통해 집을 구입하는 현지의 특성상 이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2008년 중반 이후에나 공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당분간 긴축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007년도 예상 GDP 성장률은 2006년도의 1.8%에서 많이 회복된 3.1%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외무역적자 역시 전년도 US\$21억에 비해 다소 줄어든 US\$18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무역 불균형 해소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임.

1) 수입규제 예상품목

무역 자유화를 통해 자국의 이득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규제가 특별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일부 현지 제조업체의 로비와 산업보호 목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입규제 가능성은 있다 하겠음

다만 우리나라의 대뉴 수입은 목재, 낙농제품, 소고기 등 1차 상품이,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 대립이 적은 관계로 하반기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음

2) 주재국의 통상정책 방향

주재국은 주요 공산품의 수입과 농산물 수출을 위해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음

기존의 호주, 캐나다 이외에 2005년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진행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자국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수지 관리와 일부 국내 제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규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다. 주재국의 수입규제 현황

1) 현재 조사 진행중인 건수(2007년 3월 기준)

품 목	국 가	유 형	개 시 일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view	2007. 5. 31

자료원: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 수입규제 부과(조사) 현황(2001년 이후)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일
Oil Filter	Indone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부과)	2006.04.29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5.11.15
Oral Liquid Paracetamol	Ireland	Dumping	Decision Pending	2005.03.30
Oil Filters	Korea, China, Indonesia, Thailand	Dumping	Current	2005.01.14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Imposed on Malaysia	2004.04.27
Reinforcing Steel Bar	Malaysia, Thailand	Dumping	Current	2004.03.25
Canned Peaches	Greece, EU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3.12.15
Portland Cement	Thailand	Dumping	Not Imposed	2003.11.30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Current	2003.07.14
Canned Peaches	EU	Subsidy Review	Current	2003.07.14
Hog Bristle Painbrushes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3.07.14
Glass Wool Insulation	Taiwan	Dumping	Not Imposed	2003.04.24
Hog Bristle Paintbrushes	China	Dumping Review	Current	2003.04.23
Galvanised Wire	South Africa	Dumping	Current	2002.12.21
Plasterboard	Thailand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2.12.04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2.06.11
Hollow Gold Jewellery	Italy	Dumping	Not Imposed	2001.07.22
Washing Machine	Korea	Dumping	종료	2001.06.10
Refrigerator-Freezer	Korea	Dumping	종료	2001.06.10
Tamoxifen Citrate	UK	Dumping	Not Imposed	2001.02.21

자료원: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라. 공산품 수입 무관세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공산품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마. 협정체결에 따른 특혜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칠레와 관세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외의 국가에게는 불리한 관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외에도 저개발국 및 태평양 연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일반 관세율보다 약간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관세 부과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수해도 소멸되었음

바. 유통구조

수입제품의 유통구조는 수입허가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업체가 한정되어 있던 때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문 수입상→중간 도매상→소매상→최종 소비자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다른 하나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 지고 수입 자유화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도매 또는 소매상이 직접 수입을 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유통구조가 점차 단순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수요업체는 물론 현지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중간 유통업체 대신 직접 상대국 제조업체를 접촉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직접 수입에는 한계가 있어 아직도 전문 수입상의 역할은 큼

최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고 수입 제품간의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대규모 수입상들이 일반 소비재를 직접 수입, 자신이 경영하는 대규모 직판장에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비교적 수요가 큰 산업용 원자재, 부품 및 설비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수요 업체 들이 수출상의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점에 착안, 여러 곳에서 주문을 받아 수입한 후 다시 최종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수입 에이전트도 증가 추세임

□ 유통구조 예시

- 국내 제조상품의 기본 유통구조
 - 제조업체(30%)-----> 중간도매상(30%)-----> 소매상(35%)-----> 최종 소비자
 - 제조업체(50%)-----> 소매상(30%) -----> 최종 소비자
- 수입상품의 기본 유통구조
 - 수입상(20%)-----> 중간도매상(30%)-----> 소매상(30%)-----> 최종 소비자
 - 수입상(50%)-----> 소매상(30%)-----> 최종 소비자
 - ()안은 단계별 평균 유통 마진율임

사. 도매업 및 소매업 현황

도매업과 소매업은 97년부터 시작된 국내경기 침체 및 높은 이자율 등에 따른 소비수요의 위축과 주요 유통망 간의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이윤율 하락 및 판매량 정체 등 부진을 보인 바 있으며 소매업은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3-4년간 고전을 거듭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대 상업도시인 Auckland를 비롯한 대도시 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 바 있음. 그러나 2002년부터 다시 아시아 이민자의 급증과 주택가격의 상승 그리고 경제의 호전에 따른 소비활황 등에 힘입어 도 소매업은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06년 성장도 2.7%에 이른 바 있음

2007년 1/4분기의 소매시장 판매는 2006년 4/4분기 대비 3.4% 증가했으며 최대 품목인 자동차 판매는 5.8%나 증가하여 2001년 이래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함. 자동차 이외 식당, 카페 그리고 숙박시설 이용이 증가했는데 이는 여름 방학 및 휴가가 집중되었기 때문임.

아. 수입쿼터

뉴질랜드는 교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쿼터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도 거의 없는 편임.

5. 주요인증제도

인구가 400만 명에 불과한 뉴질랜드는 환경과 사람 그리고 자연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로 엄격한 품질표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지식의 함유 및 준수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공산품의 경우 비록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는 뉴질랜드가 자국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도 공산품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요 수출 품목 별로 이에 대한 체계 적인 이해가 필요함

이러한 뉴질랜드의 표준(Standard)제도하에서는 기본적인 규제는 인체의 안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유용하며 공산품 전반에 걸친 표준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소비자 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임. 이 기관(www.standards.co.nz)을 접속해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메일 송부나 전화로도 쉽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서식 등을 입수할 수 있고 인증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음. 관련 법규로는 표준법(Standards Act 1988)이 있으며 동 법은 뉴질랜드에서 표준 사용의 촉진 및 장려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하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외에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으로 안전표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종의 Negative System으로 강제규정인 경우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규정이 많아 품목 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도 있음. 뉴질랜드 표준을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Z)을 접속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표준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유아용 유모차 표준을 입수하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유료인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뉴질랜드 표준 중에서 특이한 것은 S마크 제도로써 이를 획득하는 경우 제품에 S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강제규정은 아니나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인 동시에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S 마크는 품질검사 전담기관인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에서 실시하는 데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자체적인 시험검사를 거쳐 승인해 주며 이러한 시험단계 제품에 따라 상이함

뉴질랜드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제품의 수입업체가 뉴질랜드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 법정비용, 검사 비용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획득이 긴요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소비자 보호부가 있고 모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다소 모호하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들 제품들도 호주와 유럽, 싱가포르, APEC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이를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뉴질랜드나 호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양국 어느 곳에서건 인증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점도 있음

우리 제품의 수출이 많으면서 해당되는 사항이 많은 대표적인 품목은 식품과 전기전자 제품, 가스용품, 기계류, 의약품 등인데 주요 분야별로 규제법규 및 규제기관 등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농림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에서 담당하고 있음

뉴질랜드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ACCP 시스템(the international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food safety system.)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HACCP 시스템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정기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음

전기전자 및 가스용품은 호주나 유럽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도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 NZ)이나 소비자 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를 접촉하는 것이 필요함

기계류, 크레인, 중장비 등은 이용자나 개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 OSH(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제품 및 이용에 대한 안전을 규제하고 있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의약품이 안전, 품질, 효능 등에서 수용할만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며 제조, 저장, 유통과 관련된 사람, 장소, 관행 등이 의약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러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의약품(medicines) 및 의료기기(medical devices)와 관련한 이러한 법규의 집행은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의 메드세이프(Medsafe)가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표준을 인증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호주를 비롯,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도 있고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안전표준과 관련,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98년 5월 1일부 발효)을, EU와는 NZ/EU MRA(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그리고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을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뉴질랜드 안전표준 관련기관

- Standards New Zealand
 - 주소: 155 The Terrace Private Bag 2439, Wellington
 - Website: <http://www.standards.co.nz>
 - 전화: 64-4)498 5990 / 팩스: 64-4)498 5994
 - Email: snz@standards.co.nz
-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주소: Level 2, 25 Crowhurst Street, Newmarket, Auckland 1001
 - 전화: 64-9) 520-8790 / 팩스: 64-9) 520-5229

(자료원: 뉴질랜드 표준원(www.standards.co.nz), S마크 신청 및 승인기관(www.bureauveritas.co.nz))

6.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함.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그리고 의장권(design) 등 3가지이며 관련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음

뉴질랜드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련법률에 의한 법적 구제가 우선인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NZ\$150,000(US\$105,000)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됨

나. 특허권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 임

다. 상표권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은 서비스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 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라. 의장권

1953년 제정되어 80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 (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함

7. 관세제도

가. 대부분 무관세 수입

뉴질랜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입금지품목 예를 들어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등을 제외하고 수입이 자유롭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공산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10~20%대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자유 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 및 관세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저개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GSP)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 등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폭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함.

수입품의 관세평가는 GATT의 관세 평가 규칙(Customs Valuation Code)에 따라 수입제품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음.

나. 추가 관세인하계획

뉴질랜드는 2003년 발표한 수입관세 인하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의류와 신발, 직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음. 관세율은 지난 1999년 이후 6년간 동결된 바 있으나 이번 관세인하 계획(tariff policy for post 2005)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7~19%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의류, 신발 및 카펫 등에 대한 수입세율은 2006년 7월 1일부터 인하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10%로 인하될 예정임

그 밖의 수입관세 부과대상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도 2008년 7월까지 5%로 인하되며 2009년까지도 인하된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의류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별관세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증가세로 환원되었음

수입관세 인하계획

현행관세율	관세인하계획		
	2007.7.1	2008.7.1	2009.7.1
17	15	12.5	10
10	7.5	5	5
5-7.5	5-7.5	5	5

자료원: 뉴질랜드 정부(www.beehive.govt.nz)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과 최근에 변경된 세율(2003년 상반기 주 세율 인상 등)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음

7. 대한수입규제 동향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분쟁사례는 많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우리 제품의 수입에 대해 규제한 바가 있으며 일부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가. 수입규제사례/ 자동차용 배터리 (HS: 8507.10) 반덤핑 판정규제

- 규제기간: '91년 12월 - 2000년 2월
- 관련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 대상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 우리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 조치경과
 -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6월 덤핑 조사 착수
 - 1991년 9월 예비 덤핑 (40% 덤핑 마진율)
 - 1991년 12월 덤핑 최종 판정 (47~48% 덤핑 마진율)

-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 1999년 6월 재 검토
-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 12~18% 부과

나. 수입규제사례/ 연마용 디스크 (HS: 6804.22) 반덤핑 판정규제

- 규제 기간: 95년 10월-2000년 10월16일
- 관련 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 규제 대상국: 한국, 대만
- 규제 대상 한국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 조치 경과
 - 1995.1월 피 제소, 4월 반덤핑 조사 착수
 - 1995.7월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 1995.10월 반덤핑 최종 판정 (덤핑관세 12-16%)
 - 2000.10.17일 해제

다. 수입규제사례/ 냉장고(HS: 841810/2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년 6월10일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 조치경과
 - 2000.11월 피 제소, 12월 반덤핑 조사착수
 - 2001.3월 덤핑 예비판정
 - 2001.3월 반덤핑 잠정관세부과 (25% - 71%)
 - 2001.6월 최종판정 (32%-55%)
 - 2006.6.11 해제

라. 수입규제사례/ 세탁기(HS: 84501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년 6월10일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 조치경과
 - 2000.11월 피 제소, 12월 반덤핑 조사착수
 - 2001. 4월 덤핑 예비판정
 - 2001. 4월 반덤핑 잠정관세부과 (52% - 93%)
 - 2001. 6월 최종판정(52%-93%)
 - 2006.6.11 해제

마. 수입규제사례/ 오일필터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4년7월20일
- 잠정 판정: 2004년10월28일
- 조사 종료일: 2005년1월14일
- 규제 기간: 2005년1월14일-2010년1월14일
- 2006년 12월 뉴질랜드 오일필터 생산 공장의 폐쇄로 인한 규제사유 상실로 해제

8. 통관/운송

가. 통관제도

1)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통관절차 시행

국민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엄격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육류 및 식물 제품 등에 대해 서는 사전 수입허가 및 엄격한 통제, 사후관리 등 질병 및 기생충에 대해서 박멸 및 봉쇄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특히 2003년 상반기 SARS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여행객 수하물 및 수입화물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시장개방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규제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취약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해 고율의 덤핑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좋은 사례임

2) 일반 절차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절차를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물품의 반출 이전에 관세, GST (부가가치세 12.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물품 인도증(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3)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며, 평균 검사비율은 7.5~10% 수준이며 주로 파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4) 샘플통관

무관세 통관은 가격 기준으로 NZ\$1,000까지만 허용되므로 비록 전시회 출품용 혹은 상담 용 샘플도 송장 가격으로 NZ\$1,000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2002년 7월 전북 시개단 방문 때 모 업체의 샘플(모조 장신구) 통관이 이러한 문제로 오클랜드 세관에서 통관지연 사태가 발생한 바 있고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7%의 관세와 12.5%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따라서 간단한 샘플인 경우 송장가격을 NZ\$1,000미만으로 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발생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ATA carnets(임시 통관 요청 서류)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시반입을 허용하는 동 서류는 보통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 제품 송장 가격이 NZ\$1,000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 없이 재반출 조건으로 바로 통관 됨을 적극 활용해야 함

6) 기타 참고사항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공공기관의 행사(무역관 주관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경우는 해당 기관의 공문도 샘플통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2003년 8월 부산 시장개척단의 경우 샘플 통관과 관련, 세관 검사에서 무역관 행사 안내 및 바이어 상담 참가 요청 공문을 제시, 샘플통관이 바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나. 운송

1) 개요

뉴질랜드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구불구불한 지형과 널리 분포된 인구 및 총 길이가 2,011km이나 되는 남북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 주요 교역국들과의 교역을 원활하게 지탱해 주고 있는 운송부문은 항구와 공항으로 연결되는 약 93,000 킬로미터의 통합 도로망과 4,200 킬로미터의 철도가 주축이 되고 있음. 뉴질랜드 대외 교역의 약 90퍼센트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당량이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는 가운데 항만개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항만 기술 도입을 통해 각종 비용을 낮추어왔으며 1998년 5월의 개혁으로 거의 60퍼센트의 노동력을 감축시킨 바도 있음

많은 초기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관계로 대부분 정부 기관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었으나 8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을 위한 법적 제재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거의 민영화되었음

주요 항구별 수출 물동량 및 금액

(US\$ 백만, %)

항구(지역)	점유율	금 액		
		2007년	2006년	증감
Auckland	22.58%	4,876,971	3,624,764	34.55%
Tauranga	19.58%	4,229,509	4,309,897	-1.87%
Dunedin	12.29%	2,654,119	1,943,979	36.53%
Christchurch	7.46%	1,611,287	1,445,267	11.49%
Napier	6.95%	1,500,821	1,171,917	28.07%
New Plymouth	6.66%	1,438,355	941,248	52.81%
Invercargill	3.32%	716,168	641,708	11.60%
Nelson	2.61%	564,523	441,662	27.82%
Timaru	2.54%	547,593	669,902	-18.26%
Wellington	2.39%	515,226	501,993	2.64%
Whangarei	0.75%	161,658	144,041	12.23%
Gisborne	0.35%	75,779	49,948	51.72%
Picton	0.09%	19,775	19,233	2.82%
Taharoa	0.03%	5,567	10,533	-47.15%
기 타	0.16%	35,125	0,205	16999.25%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2) 컨테이너 비용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07년 3월 기준)

- 내륙 운송비: USD200 (각 공단에서 인근 항구까지의 운송비)
- 해상 운송비: USD2,600
-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기간: 약 25일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1) 투자매력도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넓으며 원유를 비롯한 사철, 석탄, 천연가스 등 일부 지하자원이 있으나 수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60% 가량이 소고기 등 육류와 낙농제품 및 임산물에 의존하는 1차 산업 국가이자 선진 낙농국가임

인구가 4백만에 불과하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국가이며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을 필두로 한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관광진흥을 위한 숙박시설의 신축, 확장 및 주요 관광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용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인 고용, 국산화율, 송금, 재투자 및 수출 의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자장벽이 없음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어 투자환경은 매우 좋은 여건임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뉴질랜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국가로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개방화 수준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2007년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및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발표한 경제자유지수(IEF) 5위에 올랐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6년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2위에 랭크 되고 있으며 창업 및 기업운영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자원 관리법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규제는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제조업이 아주 취약하고 인구가 적은 선진국이어서 인건비가 아주 높은 등 한국의 제조업이 이곳에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현재도 낙농제품을 위주로 한 원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조업을 위시한 한국 주력산업의 현지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임

3) 투자진출 유의사항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동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외부에서의 1차 산업원(치어, 묘목,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이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단행된 2002년 11월의 이민법 강화로 인해 장기사업 비자를 취득, 투자진출을 시도하던 유망 부문인 목재가공업 등 주요분야에서 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민을 위해서는 기술 이민은 영어평가시험(IELTS) 6.5점, 투자 이민이나 다른 이민을 위해서도 5.0을 넘어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부문의 투자증가와 개인 및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 주목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 단기 차익 혹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안고 있음

4) 투자유치 정책 개황

뉴질랜드는 경제 개방화 정도가 높고 2004-5년 연속 세계은행이 선정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업환경은 우수하나 경제규모가 작고 성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선진국으로서 높은 인건비 등이 외국의 제조업 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난 1991년에는 경기부진을 탈피하고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한 바 있으며 2006년 현재 투자에 직접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도 없고 제도적인 장애요인도 없는 것으로 평가됨

외국인 투자는 일반 부문과 민감 부문으로 구분하여 NZ\$1억 이하의 일반 부문에 대한 투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 자국의 민감 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음

2000년 이후 아시안 계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중국이 최대)들의 토지 및 건물 기타 주택 등 부동산 매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 인도에 이어 이민 3위 국가인 한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2002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활황에 따라 한국의 대뉴 투자도 부동산까지 확대되었으며 2003년부터 진출한 한국의 대주개발이 단일 동의 아파트 100여 세대를 시내에 2005년에 완공함. 대주건설은 시내 요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최고 층이 될 65층의 대형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시작할 계획으로 각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5)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자국의 민감 부문과 NZ\$1억 이상의 일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을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나. 사회간접자본

1) 전력산업

2005년 12월 기준 총 발전량은 39,421 GWh로 전년대비 0.1% 증가했으며, 수력과 풍력 발전이 23,418 GWh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화력은 16,001 GWh로 41% 비중임. 지난 1년간 화력은 3,600 GWh, 29.1% 증가한 반면 수력, 풍력은 13.2%가 준 3,550 GWh 감소

했으며 수력발전은 1995년 한때 비중이 80%까지 차지했으나 매년 감소세로 2003년에는 63%까지 내려갔다가 2004년에는 68%로 다소 증가했으며 또한 이외에 천연 가스, 지열 발전(5.5%)과 석탄, 목재, 풍력 발전 등으로 공급됨.

뉴질랜드 정부는 10% 절약을 위주로 한 절전 캠페인을 벌이면서 산업생산 차질방지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 샤워를 간단히 하거나 실내난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지만 남 섬에 위치한 전력 발전용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전기부족을 우려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전력생산은 32%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Meridian Energy를 비롯 3개 국영기업(SOE)과 Contact 등 2개의 민간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40개의 발전소가 전력을 전국적인 전력 망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밖에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이용 또는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있음

- Meridian Energy(SOE) 32% : www.meridianenergy.co.nz
- Contact Energy 24% : www.contactenergy.co.nz
- Genesis Energy(SOE) 18% : www.genesisenergy.co.nz
- Mighty River Power(SOE) 14% : www.mightyriver.co.nz
- TrustPower 5% : www.trustpower.co.nz

2) 상하수도

물에 대한 수요량은 연간 20억M3로 추정되는데, 가정용 2.1억, 산업용 2.6억, 축산용 3.5억, 농업관개 용 11억 정도로 추정되며 인구의 87%가 공공 상수도로 공급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빗물 또는 지하수로 자체 공급하고 있음

산업용은 33%가 상수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공급하고 있으며(발전용 물 수요량은 제외) 상수원과 강, 호수 등의 오염은 주로 토양의 침식, 농장으로부터의 배수, 산업용 폐수와 가정용 하수가 주요 요인임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따라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와 자원 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그리고 각 Council 에 오염 방지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오염 방지를 위한 감독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다. 국제공항 및 항구

1) 국제 공항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이자 주요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Auckland 공항은 국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음

오클랜드 공항(www.auckland-airport.co.nz)은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됨. 국제공항과 국내 공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2004년 6월 연간 기준으로 1천만 이용 승객을 기록했으며 그 중 70%가 외국인 이용자임. 매일 3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86개 국제선 및 310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으며 551화물 및 우편이 뉴질랜드와 외국간에 이동하고 있음

Wellington(www.wellington-airport.co.nz)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선 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며 Christchurch(www.christchurch-airport.co.nz)공항은 남 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뉴질랜드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36 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으로의 비행시간이 비슷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시간이 11시간을 넘고 있고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지난 93년부터 정기 취항하여 매일 주 7회 운항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27일부터 취항한 바 있는 아시아나 항공은 승객 감소와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 등 이유로 2005년 3월1일부로 운항을 중단함

뉴질랜드의 직항노선 국가

아르헨티나(Argentina)	일본(Japan)	대만(Taiwan)	쿡제도(Cook Islands)
칠레(Chile)	말련(Malaysia)	통가(Tonga)	영국(UK)
피지(Fiji)	니우에(Niue)	바누아투(Vanuatu)	인도네시아(Indonesia)
홍콩(Hong Kong)	싱가포르(Singapore)	호주(Australia)	한국(Korea)
서사모아(Western Samoa)	미국(USA)	타히티(Tahiti)	태국(Thailand)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노포크 제도(Norfolk Island)	

자료원: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Aerolineas Argentinas	www.aerolineas.com.ar	+64 9 379 3675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 9 336 2400
Air Pacific	www.airpacific.com	+64 9 379 2404
Air Tahiti Nui	www.airtahitinui-usa.com	+64 9 308 3360
Air Vanuatu	www.airvanuatu.com	+64 9 367 2324
Aircalin	www.aircalin.nc	+64 9 308 3363
American Airlines	www.aa.com	+64 9 309 9159
Asiana Airlines	us.flyasiana.com	+64 9 256 6681
British Airways plc	www.britishairways.com	+64 9 306 5575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 9 379 0861
Emirates	www.emirates.com	+64 9 377 6004
EVA Air	www.evaair.com	+64 9 358 8300
Freedom Air	www.freedomair.co.nz	0800 600 500
Garuda Indonesia	www.garuda-indonesia.com	+64 9 366 1862
Japan Airlines	www.jal.co.jp/en/	+64 9 379 9906
KLM & Northwest Airlines	www.klm.com	+64 9 309 1782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 9 914 2000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2) 국제 항구

북섬의 Tauranga, Auckland, Napier, New Plymouth 남 섬의 Christchurch, Dunedin, Nelson 등이 주요 항구임. 수출 물량은 원목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 섬 동부의 Tauranga가 물동량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이 남 섬 Christchurch항이며 이어 최대 도시인 Auckland, Napier 순으로 규모가 큼

수입 물량은 오클랜드 북쪽에 위치한 Whangarei항이 가장 물동량이 많고 다음 Auckland, Tauranga, 등 북섬 항구 순으로 수입 상품이 주로 북섬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주요 항구별 수출 물동량 및 금액

(US\$ 백만, %)

항구(지역)	점유율	금 액		
		2007년	2006년	증감
Auckland	22.58%	4,876,971	3,624,764	34.55%
Tauranga	19.58%	4,229,509	4,309,897	-1.87%
Dunedin	12.29%	2,654,119	1,943,979	36.53%
Christchurch	7.46%	1,611,287	1,445,267	11.49%
Napier	6.95%	1,500,821	1,171,917	28.07%
New Plymouth	6.66%	1,438,355	941,248	52.81%
Invercargill	3.32%	716,168	641,708	11.60%
Nelson	2.61%	564,523	441,662	27.82%
Timaru	2.54%	547,593	669,902	-18.26%
Wellington	2.39%	515,226	501,993	2.64%
Whangarei	0.75%	161,658	144,041	12.23%
Gisborne	0.35%	75,779	49,948	51.72%
Picton	0.09%	19,775	19,233	2.82%
Taharoa	0.03%	5,567	10,533	-47.15%
기 타	0.16%	35,125	0,205	16999.25%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라. 국가경쟁력/경제자유지수 및 신용등급

1) 2007년 국가경쟁력 19위 -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 연구원(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전체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 2006년 21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관심 대상인 호주는 지난해 6위에서 12위로 6계단 떨어져 뉴질랜드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미국이 1위를 차지한 반면 싱가포르의 지난해 2위인 홍콩을 한 계단 밀어내고 2위를 차지함. 한국은 29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올라섰다. 하위권에는 베네수엘라(55위), 인도네시아(54위), 크로아티아 (53위)등의 국가가 차지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기업효율 18위 및 정부효율 6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인프라 및 경제성 지표에서는 각각 23위 및 40위를 차지하여 55개국 중 전체 순위 19위를 차지했는데 IMD는 역점을 뒤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했음

□ 뉴질랜드의 역점과제

-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를 위한 법인세 구조의 변화
- 숙련된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정책 채택
- 충분한 에너지 및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 도로 및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확대
- 노동 생산성 격려 및 기업 능력 개선

2) 기업환경(세계 16위)-영국 이코노미스트

2003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전문 연구 기관인 EIU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전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2003~2007년 기업활동환경 평가 결과에서 뉴질랜드는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 조사에서 1위는 캐나다가 차지했으며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7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홍콩(8위) 오스트레 일리아(12위), 대만(17위)였으며 한국은 26위, 중국은 38위에 머물렀음

EIU는 5년에 한번씩 △사회간접자본시설 △대외무역 및 해외자본에 대한 개방도 △국제 테러에 대한 노출 등 10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활동 환경을 평가해 발표 하고 있음

3) 기업하기 좋은 나라(세계 2위)-세계은행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2위로 선정되어 기업 활동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에 의해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23위에 그친 한국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

2006년 9월 6일 세계은행이 전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조사해 발표한 [2007년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뉴질랜드의 기업활동 평가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고 호주, 홍콩, 덴마크, 영국, 일본 등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10위에 들었음

5) 부패 없는 청렴국가(세계2위)-국제투명성기구

부패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2006년 8월 발표한 2006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뉴질랜드는 2005년 청렴성 순위 2위에서 2006년 순위가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함께 조사대상 146개국 중 공동 1위에 올라 부패 없는 국가, 투명한 국가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음

5.1점으로 헝가리(5.2점), 말레이시아(5.0점)와 비슷한 청렴도를 보인 한국은 2005년의 40위 에서 두 계단 하락한 42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24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뉴질랜드와 대조를 보였음

6) 뉴질랜드의 신용등급-피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003년 8월18일 뉴질랜드의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조정사유에 대해 피치는 뉴질랜드가 국제 상품가격의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높은 저항력을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의 신용등급을 상향했다고 밝힘.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03년 11월27일 뉴질랜드의 장기 외화 표시 채권에 AA+, 자국통화표시채권에 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 한다고 밝혔음

2006년 뉴질랜드 국내총생산(GDP)은 1.7% 성장했지만 올해는 3.1%로 다소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는 2003, 2004년의 4.4% 및 4.6% 성장에 비하면 아직 많이 낮은 수치임.

마. 투자허가

1) 투자업무 담당기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거의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

2) 투자 승인 및 신청서류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NZ\$1억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 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외투자실\(OI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함.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위원회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함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 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 승인 여부를 위한 신청서 검토의 주안점임. 승인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 외국인 투자법 개정

뉴질랜드 정부는 2004년 7월 20일 기존 외국인 투자법(the Overseas Investment Act)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동 법의 개정도 투자제한 보다는 일부 보완의 형태를 띠고 있음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외국인 투자 위원회(OIC: 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를 폐지 하고 토지 정보국(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뉴질랜드의 주요 토지 매각조건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음

이러한 개정은 2003년 기스본(Gisborne) 근처의 Young Nick's Head 토지를 외국인들에게 매각할 당시 여론의 저항이 심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투자 누적 총액 NZ\$ 2,363억 규모

2006년 3월말 기준 뉴질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NZD 780억7천2백만으로 2005년도 NZD 733억7천4백만에 비해 NZD 46억9천8백만이 늘어난 규모임. 통계청(Statistics NZ)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월말 뉴질랜드에 유입된 각종 외국인투자 누계는 NZD 2,346억3천9백만으로 2005년도 NZD 2,151억6천8백만에 비해 9% 증가함. 그중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장 많은 NZD 831억1천7백만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접투자이며 무역신용과 론(Loan) 등 기타 형태의 투자도 NZD 659억1백만으로 나타남. 직접투자 누적 규모는 2003년 NZD 582억9천6백만, 2004년 NZD 689억2천8백만, 2005년 NZD 733억7천4백만으로 계속 증가 추세임.

인근 호주가 최대 투자국으로 총 투자액의 50.5%를 차지하여 양국의 경제 긴밀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2006년 3월말 기준 NZD 393억9천5백만으로 2005년에 비해 15%가 증가함. 다음 미국이 NZD 87억9천5백만, 영국이 NZD 39억9백만, 네덜란드가 NZD 38억4천8백만 순이며 이들 4개국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71.7%를 차지하고 있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 주요 투자국으로서 일본이 NZD 16억5천2백만, 싱가포르가 NZD 12억6천3백만, 그리고 홍콩이 NZD 5억8천5백만이며 경제권별로 보면 선진국 그룹인 OECD국가가 NZD 624억5천3백만을 투자하여 80%를 차지했으며, ASEAN국가는 NZD 11억5천1백만에 1.5%를 차지하여 뉴질랜드에 대한 직접투자가 주로 서구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 주고 있음.

주요 국가 및 경제권별 투자(누계) 현황

(단위: NZD 백만)

국가 및 단체명	2002	2003	2004	2005	2006
OECD	42,273	41,872	51,245	58,768	62,453
APEC	30,403	34,034	44,888	51,614	56,067
EU	11,283	12,722	10,537	11,641	10,826
ASEAN	1,227	961	1,082	1,165	1,151
호 주	17,816	21,189	29,668	34,245	39,395
미 국	8,873	5,967	7,714	9,239	8,795
영 국	5,892	6,371	5,033	4,439	3,909
네덜란드	3,891	3,738	3,508	4,244	3,848
일 본	1,191	1,292	1,532	1,700	1,652
독 일	(C)	(C)	1,194	1,343	1,593
싱가포르	1,225	986	1,226	1,254	1,263
캐나다	458	792	889	1,100	1,044
홍 콩	738	772	757	778	585
스위스	174	190	161	114	52
전체	56,034	58,296	68,928	73,374	78,072

주1) 해당연도 3월말 기준, (C)는 Confidential로 공개되지 않음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of New Zealand)

연도별 투자는 2004년, 2005년 각각 NZD 43억2백만, NZD 44억6천2백만에서 2006년 NZD 24억2천1백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부 프로젝트가 비공개(Confidential)로 동 투자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확한 투자규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역시 호주가 NZD 48억2천5백만으로 가장 많으며 영국과 캐나다는 투자분을 반출한 것이 더 많아 각각 NZD 67억 4천만, NZD 25억의 마이너스 순 투자를 나타냄.

주요 국가 및 경제권별 투자(연도별) 현황

(단위: NZD 백만)

국가 및 단체명	2002	2003	2004	2005	2006
호 주	1,193	2,093	6,215	4,020	4,825
미 국	-1,376	-250	1,195	731	-674
영 국	-191	555	-4,386	-1,111	-625
네덜란드	-2,965	148	-495	788	(C)
일 본	374	48	(C)	165	(C)
독 일	203	1,611	200	132	193
싱가포르	202	79	28	183	7
캐나다	(C)	(C)	157	115	-250
홍 콩	-293	(C)	(C)	-70	(C)
스위스	-40	11	-63	-38	-73
전체	-2,707	3,517	4,302	4,462	2,421

주1) 투자회수(반출)분이 반영되어 마이너스(-) 투자의 경우도 있음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of New Zealand)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뉴질랜드 통계청은 국가별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별, 지역별 투자 현황을 집계치 않고 있음) 자세한 투자 동향을 알 수 없으나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투자 대상국과는 다른 투자 유형으로 알려짐. 즉 공장 건설이나 이전을 위한 투자가 아닌 뉴질랜드가 갖는 자연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농림 어업 분야에 투자 또는 인프라나 부동산개발 투자가 많은 편이며 또한 신규 사업을 전개하기보다 기존의 현지 유력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의 연기금 이나 헤지펀드 등 국제자본이 뉴질랜드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뉴질랜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제한이나 외환거래에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정부기관의 특별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NZD 1억불 이상 투자나 특별한 토지 구입 등의 경우에는 토지정보부(Land Information NZ)내 해외투자실 (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 의 승인을 필요로 함. OIO는 2005년 8월의 새로운 해외투자법(The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해 과거의 해외투자위원회(OIC: 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를 대체하며 설치되었는데 해외투자실은 2006년 한해 동안 160건에 총 NZD 204억6천7백만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NZD 38억8천3백만이 순 투자된 것으로 발표함. 2007년 1분기에는 총 규모 NZD 27억8천만 규모에 달하는 30건의 투자가 승인됐으며 순 투자는 NZD 17억6천9백만임.

(*해외투자실은 승인된 외국인투자의 국가별, 산업별, 지역별 세부 현황을 2005년 말까지는 공개했으나 2006년 자료부터 집계, 공개를 중단하고, 대신에 2006년 11월부터 매월 승인된 건수 및 금액,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나. 전력, 가스 공급 및 농업, 부동산, 금융 부문 투자 높아

최근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지역별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통계청, 해외투자실 자료 모두)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로 농림어업 및 부동산, 인프라개발 등에 외국자본이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현지 기업 인수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특색을 보이는 것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2001년 - 2005년 기간 중 해외투자실의 과거 자료나마 참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OIO(Overseas Investment Office)가 집계한 외국인투자는 2004년, 2005년(연도 말 기준)에 각각 NZD 37억7천8백만, NZD 28억7천2백만을 기록했으며, 2001년부터 최근 5년간의 외국인투자 누계는 NZD 95억9천4백만에 달하고 있음.

업종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NZD 백만)

업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05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제조업	28	146	12	164	9	647	10	586	10	432	69	1,975
전력/가스/수도	4	37	2	-0.1	2	39	3	1,746	2	0.9	13	1,823
농업	119	791	107	336	69	135	45	86	60	130	400	1,478
부동산서비스	8	-181	28	209	30	114	29	548	39	454	134	1,144
금융/보험	6	47	4	9	6	35	1	68	4	555	21	714
보건	-	-	1	0	-	-	2	108	8	594	11	702
문화/레저	13	-28	10	13	3	6	5	-35	3	473	34	428
임업	59	30	51	-412	40	384	26	266	24	159	200	427
운송/창고	3	19	3	5	3	155	4	116	4	6	17	300
도소매업	6	19	4	-1	4	0	3	139	8	34	25	191
광업	6	5	18	4	36	38	8	87	5	8	73	141
통신서비스	4	0	3	22	4	58	1	51	-	-	12	131
주거부동산	18	11	24	14	24	16	28	13	20	10	114	65
숙박업	13	5	8	11	8	14	10	-4	12	11	51	38
수산업	1	23	1	0.4	-	-	-	-	-	-	2	24
건설업	2	4	-	-	-	-	1	0	4	6	7	10
교육서비스	-	-	3	0.7	-	-	2	2	-	-	5	3
기타			1	0	-	-	-	-	-	-	1	0.1
계		928		375		1,641		3,777		2,873		9,594

자료원: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호주로부터는 투자 회수 없이 매년 순 투자가 이루어져 총 3,003건, NZD 119억5천4백만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401건에 NZD 19억6천2백만으로 2위를 차지함. 반면 영국은 NZD 41억9천6백만, 중국 NZD 12억1천7백만, 아일랜드 NZD 2억2천3백만, 홍콩 NZD 2억8백만이 투자 회수 또는 반출됨.

우리나라는 2001년 3건에 NZD 46만, 2002년 3건 NZD 2,560만, 2003년 6건 NZD 1,700만, 2004년 1건 NZD 150만, 2005년 1건 NZD 5,850만으로 총 14건, NZD 1억310만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69건에 NZD 19억7천5백만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력, 가스 부문이 13건에 NZD 18억2천3백만, 농업부문이 400건에 NZD 14억 7천8백만, 부동산 및 기업 서비스 부문이 134건에 NZD 11억4천4백만, 금융, 보험분야가 21건에 NZD 7억1천4백만임.

다. 북 섬의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 가장 많아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북 섬과 남 섬에 골고루 퍼져 있어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집중도는 낮음.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상공업 중심지인 북 섬의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가장 활발하여 2001-2005년 기간 중 오클랜드에 가장 많은 149건에 NZ\$ 1,838백만이 투자됐으며 다음이 북 섬의 동북부 지역인 베이오브플렌티로 130건에 NZ\$ 980백만임.

남 섬에서는 북단에 위치한 넬슨이 가장 많은 134건에 NZ\$ 747백만이, 남 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를 포함하고 있는 캔터베리 지역이 다음으로 107건에 NZ\$ 663백만이 투자됨.

라. 주요 외국투자기업 (2006년~2007년 1분기)

투자기업	국적	투자 및 인수대상	투자금액(NZ\$)	지역
CDL	싱가포르	랑데부 호텔	1억 1천만	오클랜드
CAID Pty	기업연합(미국, 영국, 싱가포르)	토지 매입	2억	남북섬 각지역
Nikko Investment	기업연합(미국, 일본, 캐나다)	Hire Equip	1억 7천만	오클랜드
Suncorp	호주	Promina Group	89억 4천만	오클랜드
Pepsi	미국	Bluebird Foods	2억 5천만	오클랜드
Sirius Finance	기업연합(미국, 호주)	Blue Star Print Group	1억 7천만	오클랜드
Alico HIT	호주	Strategic InvestmentGroup	2억 2천만	오클랜드

자료원: 해외투자실 (Overseas Investment Office)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의 투자는 2006년 말 US\$ 248백만, 기업형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투자는 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인데 2006년 말 기준 우리의 투자는 신고기준 248건에 US\$ 2억 4천 9백만이나 실제 투자는 218건에 US\$ 1억 2천 5백만이 이루어짐.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는 이민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투자액이 건당 평균 US\$57만2천에 불과한 소규모 임을 보여주고 있음.

이민 투자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만 제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 사업지 비자 정책을 채택하면서 크게 증가했는데 2000년 이후의 투자가가 193건에 US\$ 105,850천으로 전체 건수와 금액의 각각 88.1%, 84.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연도별 대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0-90	7	1,636,305	171	215,834
1991	3	4,949	1	44
1992	1	1,000	3	3,797
1993	0	0	0	280
1994	3	1,700	2	361
1995	6	5,326	4	2,025
1996	9	10,463	6	5,875
1997	5	70,889	4	2,952
1998	0	288	1	1,570
1999	1	356	1	417
2000	25	5,306	24	4,331
2001	67	14,776	55	7,891
2002	59	28,471	51	14,026
2003	32	33,357	31	33,855
2004	14	24,269	12	16,689
2005	9	24,169	10	24,828
2006	10	21,545	9	4,225
Total	248	248,545	219	124,783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나. 우리나라는 임업, 식품, 부동산 개발 등에 주로 투자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초기에는 현지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한 임업, 식품 분야에의 투자가 두드러졌는데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목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목을 받던 중 96년에는 국내 H사가 현지에서 목재생산을 위해 직접 조림사업에 투자함. 이는 일조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고 강수량 역시 풍부하여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환경을 잘 활용한 성공적 투자 프로젝트로 평가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목재 관련 기업이 제 3국을 통하여 약 NZD 5천5백만 규모의 현지 미국계 MDF 제조기업을 인수하기도 함.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부동산 투자가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직장인과 유학생 등을 위한 도심지역의 중소형 위주 아파트 건설 붐에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음.

2005년에 우리나라 중견 건설업체가 오클랜드 시내에 토지를 직접 구입, 단일동의 아파트 건물을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으며 현재 시내 중심 요지에 토지를 구입하고 50 ~ 60층의 고층 주상복합빌딩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최근에는 도심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교외지역에까지 주택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별 투자에 있어 건수로는 숙박 음식업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 56건의 도소매업, 36건의 서비스업, 24건의 제조업, 18건의 농림어업 순을 차지하고 있음. 투자 금액에서는 US\$ 36,871천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 건설업 US\$ 28,920천에 이어 숙박 음식업에 US\$ 14,988천, 도소매업에 US\$ 12,742천, 제조업에 US\$ 11,187천 등이 투자됨.

산업별 대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분류	2004		2005		2006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	16,689	10	24,828	9	4,225	219	124,783
농림어업	1	5,418	0	2,959	0	1,316	18	36,871
제조업	2	381	1	456	-	-	24	11,187
건설업	0	5,988	1	4,169	2	638	8	28,920
도소매업	1	391	5	5,228	2	82	56	12,742
운수창고업	0	8	-	-	2	607	5	1,235
숙박음식업	6	2,710	1	802	0	170	67	14,988
서비스업	2	1,793	1	895	1	934	36	7,327
부동산업	-	-	1	10,319	2	478	5	11,513

* 주: 건수가 0은 기존 신고 투자건의 추가 투자 경우임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지역별 투자 분포에 대한 세부 자료는 없으나 대부분의 투자가 뉴질랜드 내 최대의 도시이자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북섬의 오클랜드와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분야에 따라서 주된 진출지역에 차이가 있는데 조림산업은 북섬 동부의 기스본 지역에, 수산업은 남섬 동부의 더니든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주요 투자기업 현황

(단위: US\$ 천)

현지 법인명	업종/품목	신고액	투자액	인가연도
Ganada Housing Ltd	건 설	31,744	24,980	2002
Hansol NZ Ltd	농림어업(조림)	87,539	22,333	1993
HH Development NZ	부동산업	10,689	10,319	2005
Prime Resources Co.	농림어업(목재)	8,064	8,064	2003
Australian Development Ltd	서비스업	7,000	5,307	2006
Ottogi NZ	식품가공	4,600	4,600	1996
Stavefield Holdings	농림어업	4,875	3,527	1991
KIWI Steel NZ	철강무역	3,711	2,614	1996
DK NZ Forestry Ltd	원목무역	4,000	2,000	1995
Christchurch Resort Ltd	레저산업	1,980	1,969	2004
HM E&C NZ Ltd	건 설	2,000	1,593	2003
Traveller Int'l Motel	숙박업	2,400	1,265	2003
Dae Hyun NZ	수산업	1,141	1,141	1995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다. 뉴질랜드의 대한 투자는US\$ 18.9백만 수준

뉴질랜드의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못하며 2004년 말 현재 식품 제조, 전기 및 전자, 도.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총 35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정도임. 금액 기준으로 대 대한 투자는 US\$18,902천에 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투자건수와 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양국간 교역규모와 경제여건에도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이 부재한 뉴질랜드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음

분야별 투자로는 낙농산업의 강세를 반영하여 치즈 제조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전자,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별 투자현황을 보면 NZ Trading Board가 한국의 매일 치즈와 치즈제조업, Fielding Nominess NZ가 화신 전선과 전기제조업, WS Asia Pacific Holdings가 CWS 코리아와 무역업 등에 투자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대한투자 주요기업 현황

(단위: US\$천, %)

연번	현지법인명(투자자명)	인가일	투자금액	사업명(업종)
1	매일 뉴질랜드 치즈(주)	89.9	8,922	치즈제조(식품)
2	메타백스코 뉴질랜드	99.8	3,031	도.소매업
3	하이 트론씨(주)	96.4	1,624	전기.전자
4	지원산업(주)	89.12	1,477	전기.전자
5	화신 전선	89.3	743	전기.전자
6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	93.4	380	무역업
7	한국금속기와(주)	95.4	245	금속판제품제조
8	한생 식품	89.7	138	무역업
9	서울 아쿠어리 21	99.3	40	사설시설운영

자료: 재정경제부 해외투자통계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유치 정책 개황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권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 해외투자법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관할 법
- 이 법에 의해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함.
- 해외투자법의 세부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 www.oio.linz.govt.nz에서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음.

□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 토지관련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함.
 - 토지 총 면적 5헥타 초과시
 - 토지 총 면적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 면적이 4,000평방 미터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 또는 역사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함
 -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 주식 매입 금액이 NZ\$1억불을 초과하는 경우
 - 회사 발행주식 감정가 총액이 NZ\$1억불을 초과하는 경우
 - 투자 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액이 NZ\$1억불을 초과하는 경우
-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NZ\$1억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다. 토지 투자 승인 절차 (승인 필요 시)

□ 승인신청서 작성 요령

-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주소로 송부되어야 함.
 - The Manager
 - Overseas Investment Offi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 Fax: + 64 4 460 0111
 - Email: oio@linz.govt.nz

-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되어야 함.

신청인 (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 (Investment)	- 신청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 방법
토지 (Land)	- 토지의 면적 (헥터 또는 평방미터) - 법적 명세서 - 1개월 이내 등기부 - 주소 및 지역을 포함한 위치 및 주변 지도 - 토지소유권의 종류 - 매입 후 분할 예정인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투자 이유(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 NZ\$8,200불이며 최고 NZ\$21,800불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됨.

라. 토지를 제외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

□ 승인신청서 작성 요령

-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며 아래의 주소로 송부
- The Manager
 - Overseas Investment Offi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 Fax: + 64 4 460 0111 /Email: oio@linz.govt.nz
-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신청인 (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 (Investment)	- 신청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에 대한 설명
투자 이유(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 NZ\$2,100불이며 최고 NZ\$5,300불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됨.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 개요

- 뉴질랜드에서 외국법인(overseas company)의 설립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거해 이루어지며 동 법인은 뉴질랜드 외 지역법인(a body corporate that is Corporated outside New Zealand)으로 정의되며 뉴질랜드에서의 영업활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에 한정되고 있음
 - 뉴질랜드 내 자회사 설치 및 뉴질랜드 법인 등록(회사법 2장)
 - 뉴질랜드 내 지사 설치 및 외국법인 등록(회사법 18장)
 - 기존 외국법인의 뉴질랜드 법인으로의 변경 및 등록(회사법 2장)
- 상기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영업활동 개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관련 행정 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적법한 활동이 가능함

나. 지사 등록 절차

- 회사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등록서류 구비 및 제출
- 신청서(Form 19-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Overseas Company on the Overseas Register)를 작성하고 기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오클랜드 기업청(Auckland Companies Office) 기업 등록과(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
- 신청서 주요 작성 내용
 - 지사명
 - 신청서 작성 당시 이사(directors)들의 거주지 및 성명
 - 뉴질랜드 내 지사 주소
 - 지사설립과 관련하여 서류작성 등의 작업을 담당할 뉴질랜드 내 담당자
 - 성명 및 주소
- 구비 서류
 - 외국법인등록 증명서류 및 영문 정관(정관의 영문으로의 번역이 필요할 경우 뉴질랜드 회사법 규정에 따른 인증 필요)
 - 특정 지사명 보유 사실 증명서

다. 등록처 및 소요비용

- 등록처: the Companies Office National Processing Center, Private Bag 92061, Auckland Mail Center, New Zealand
- 등록방법: 관련서류 일체를 상기 주소로 메일 송부하거나 팩스로 송신 가능[팩스 64-9)912-7787]
- 수수료: 소정의 수수료도 함께 송부해야 함.

라. 기타 사항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고 설립 시 위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부터 세금번호(IRD)를 부여 받아 발생한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지사와는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의 경우 뉴질랜드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본국 에서 소요 되는 비용을 송금 받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직원의 장기 비자 획득 이 어려우며 뉴질랜드는 상법상 단순 사무소라는 개념은 없음을 참고해야 함

뉴질랜드에서 법인 혹은 지사 설치 시 별도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없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형식적인 NZ\$1,000의 자본금으로 법인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상기 사항은 지사설립에 따른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며 지사 설립을 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법규(Land Transfer Act, Income Tax Act, Financial Reporting Act 등)도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분야의 전문가(현지 회계사 혹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으며 한국교포 회계사, 변호사 및 세무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보임

마. 투자방식

일반적으로 단독 혹은 합작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제조업 위주의 이러한 분류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합의에 의한 융통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관광 및 숙박 등 부대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 볼 때 뉴질랜드 현지인 들의 투자 방식과 사업 운영 형태도 인지해야 되는데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이나 인력 집약적인 고용산업은 없음

즉, 전체 기업의 86% 정도가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자영 혹은 일부 파트타임 근로자를 활용하여 관광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도 합작 투자는 활발하지 않음

한국에서의 투자도 부동산(토지) 취득, 소규모 자영업체의 개설 혹은 인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방식은 단독이 되는 것이 보편적임

6. 투자입지여건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부재해 외국인 투자가 거의 없으며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자산투자가 활발한 정도에 불과함

한국기업의 제조업 투자도 식품기업인 오뚜기가 유일할 정도로 미미한 데 이는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서도 높은 인건비, 제조업 부재로 인한 산업연관효과의 미약 등 투자환경으로 인한 제약이 많기 때문임

일부 목재 가공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원목 가공수입을 위해 진출한 바 있으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참치, 오징어 잡이를 위해 일부 수산업체들이 남섬 지역에 진출해 있기도 함

투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별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며 특히 뉴질랜드는 환경을 중시하는 여건이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자원관리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장성 평가

- 투자인센티브 및 주변 시장여건,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검토
- 정부의 규제여부 및 기존 진출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 경쟁환경 및 인프라 검토 분석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분석
- 뉴질랜드 인증제도 및 산업표준 등에 대한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뉴질랜드 유력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착수
- 규모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편의성, 경제성 및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교포 변호사 및 회계사 자문도 좋을 것임

□ 투자진출 형태 결정

- 법인, 지사, 지점 등과 파트너 쉽 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뉴질랜드는 제조업 투자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고 일부 교포 대상의 소규모 투자이민 혹은 기존 정착 교포에 의한 소형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당연히 단독투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음

□ 사업장소 부지선정

- 입지여건 및 허가 용이성 여부
- 개발지역 여부 및 토지획득 등에 따른 편의성
- 인근 주민의 동의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
- 보건, 안전, 환경규제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침
- 부동산 관련 세제

□ 금융

- 은행대출 가능성 및 비율 등
- 지주회사로부터의 현금 출자
- 주식 발행 등 자금조달 방법
- 금융 환경 전반에 대한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사업 이해

□ 노무관리

- 노동법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전 이해
- 적정 고용인력의 관리 및 소득세 등 세제 검토
- 교육 훈련 및 유용인력의 확보 여부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및 노동시장

현 노동법(2003년 12월 4일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강화하고,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노동자가 보호되고, 사용주가 기존의 고용 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음.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체가 매각될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새로운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자는 이전 직장에서의와 똑같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며 해고될 경우 계약서에 해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금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 기본적인 고용 여건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광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가 4백만 명을 겨우 넘어 인력이 부족하며 이를 아시아 및 남태평양 이민자들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건비 및 서비스 요금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급 인력의 호주 및 미국 등지로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고용 여건은 양호하지 못해 고급인력과 단순인력 사이의 노동시장 차별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주택 및 건설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호황국면을 유지하면서 숙련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임금이상 요인이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 및 중앙 은행도 이러한 변수가 물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2) 고용절차

뉴질랜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인 이하 회사 비율이 96%를 넘고 있으며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신문광고, 취업알선 전문회사를 통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직원 1,2명 정도의 채용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직원 채용 방식으로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음.

이들은 직원 채용 후에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용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함.

3) 인력수급

2007년 3/4분기의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3.5%로써 전년 12월 실업률에 대비해 0.2%가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2002년을 시작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2007년 9월 기준으로 8,300명의 순 인구유입을 기록함에 따라 기업들의 경우 숙련된 노동자 기술자들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이민문호의 대폭 축소와 함께 뉴질랜드인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호주 및 세계 각국으로의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음.

4) 외국인의 고용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는 비교적 단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업 허가는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피고용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취업 허가가 발급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동력을 "뉴질랜드 현지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한다.

5) 임금수준

2007년 3/4분기 기준, 현재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NZ\$23.10 이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NZ\$11.25 에 이르고 있어 높은 노동 비용 수준이며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6)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27일 인정한 법정 성인 최저임금인 시간당 NZ\$10.25, 청소년 최저 임금 (Minimum Youth Wage) NZ\$8.20을 각각 NZ\$11.25 및 NZ\$9.00으로 다시 인상함. 이는 1999년 노동당 정부 집권 이래 성인임금은 61%, 청소년 임금은 11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는 이 최저임금을 2008년 말까지 NZ\$12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고용주 및 제조업 연합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회원의 70% 이상이 이 같은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80% 이상의 회원사 들이 근무시간의 축소 또는 직원 수의 축소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2008년까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복지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1930년대 최초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했을 정도로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실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광범위한 의료 혜택도 무료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현재 Work and Income이라는 기관과 IRD (국세청)에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Work and Income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IRD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 환급 및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지난 2005년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공약으로 발표했던 Working For Family 라는 근로자 수당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2007년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산층은 대폭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되며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수당의 증액효과를 가져오게 됨.

2) 주요 사회 보장제도

- 가족수당
 - ‘Family Tax Credit’. 이전의 ‘Family Support’에서 명칭이 바뀜
 - 만 18세 미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소득 NZ\$56,000~130,000 이하의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됨.

2007/2008 회계연도 가족수당 지급 기준

만13세 이하 기준 자녀수	연소득 상한금액(세전)
1 명	\$56,320
2 명	\$71,140
3 명	\$84,960
4 명	\$100,780
5 명	\$115,600
6 명	\$130,420

자료원: 뉴질랜드 국세청

-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 16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지급
- 노후연금 (National Super Annuation)
 -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3) 출산 휴가 및 수당

현재 출산 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당 NZ\$372.12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Department of Labour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이외에도 뉴질랜드에는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을 비롯 양로수당(Rest Home Subsidy), 고아수당(Orphan's Benefit), 미망인 수당(Widow's Benefit), 장애인 수당(Invalid's Benefit)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음. 근로수당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 가능한 정부 기관은 다음과 같음: Department of Work and Income New Zealand, IRD, Department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4) 의료보험제도

뉴질랜드는 사회보장 선진국답게 의료보장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보험제도는 한국에서의 의료보험과는 달리 보장성이 강한 사보험으로서 강제 보험이 아니어서 가입 여부 및 상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보험료가 성인의 절반 이하임. 보험료는 종류 및 옵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시 입원, 수술만 보장하는 연간 1인 당 NZ\$200~300의 사보험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NZ\$1,000이상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기도 함. 전반적으로는 가족 단위로 NZ\$1,000~2,500 정도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보험 혜택은 가입 이전의 질병은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만 가능함.

5) 국가 부담의 의료보장체계 확립

뉴질랜드는 국립병원에서의 치료비용,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용, 임신기간과 출산 시의 모든 비용, 6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의 방문 치료비용, 유아, 초등학생을 포함 한 14세까지 기본 치과 치료 비용 등은 국가부담으로 무료로 가능함. 교통사고, 부상, 화상, 골절 및 기타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각 지역에 소재한 응급 전문기관 (Accident and Emergency Clinic)에서 치료 가능하며 비용은 정부기관(ACC)에서 부담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의료체계는 거의 모든 경우 가정의(GP: General Practitioner)의 검진을 거친 후 2차 진료기관으로 가게 되며 전문의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소견서를 써주고 전문의를 추천해 주고 있음. 국립병원은 주요 도시에 있으며 진료비용은 영주권자 이상의 경우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입원 시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이 모두 무료이며 사립병원은 국립 병원보다 다소 규모가 작고 서비스가 좋지만 개인부담이며 치료비용이 비싸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한 이용률이 아주 낮음.

그 밖의 특이한 사항으로 뉴질랜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정부에서 치과 진료를 시작한 최초의 국가로서 자비로 치료도 가능하지만 13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의 치과 간호사로부터 무료로 정기 치료를 받는 것이 보통임. 13에서 18세의 미성년자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뉴질랜드의 조세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 (IRD)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등을 들 수 있음. 매년 4월 1일~익년 3월 31일을 기본 세무 회계연도로 하여 경상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 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제 연도의 제 4월, 제 8월 및 제 13월에 추정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제 연도의 제 13월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함 (IRD 승인 하에 기업별로 세제연도 조정가능)

나. 조세종류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는 현행 33%이며 비 현지 기업(외국기업 사무소 및 지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세율은 현행 연 소득 NZ\$38,000까지 19.5%, NZ\$38,001~60,000에 대해서는 33%, NZ\$60,000이상은 39%가 부과되는 누진제도를 시행중임.

상속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세(Gift Tax)는 연간 NZ\$12,000이상은 IRD에 신고해야 하며, NZ\$27,000이상의 경우 증여 금액에 따라 5~25%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주식 등의 배당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금 이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과 합산되어 개인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됨. 세금신고번호 (IRD 번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39%가 적용됨.

부가가치세(GST)는 12.5%이며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 (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편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 당 분기별 NZ\$200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NZ\$15,000을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 거주 과세 보류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 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됨.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 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됨.

다. 높은 법인세 부과가 투자장애요인

2006년 OECD의 발표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법인세율(33%)은 OECD 평균인 26.2%보다 훨씬 높아 투자 및 기업활동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상위 투자국은 호주 및 영국, 아일랜드 계열의 그룹인데 법인세율이 호주의 30% (2002년 인하)보다 높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임. 현재의 안정된 경제기반 하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989년까지 유지된 바 있는 28%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

이에 따라 오랫동안 법인세의 인하를 검토해온 정부는 지난 5월 마이클 컬렌(Michael Cullen) 재무부 장관이 예산안 발표와 함께 2008년 4월부터 법인세를 30%로 인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 지었음.

OECD 국가 법인세 비교

상위 순위	국가	세율%	하위순위	국가	세율%
1	스페인/미국	35	1	스위스	8.5
3	프랑스	34.43	2	아일랜드	12.5
4	벨기에	33.99	3	헝가리	16
5	이탈리아/뉴질랜드	33	4	아이슬랜드	18
7	영국/호주	30	5	슬로바키아	19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금융시장 개황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관리 및 재정정책은 재무부(Treasury)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2004년 6차례, 2005년 3차례 등 9차례 걸쳐 기준금리(OCR)를 1.75%나 인상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다시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 인상함.

2007년 12월 현재

변동일	변동폭 %	기준금리 %	변동일	변동폭 %	기준금리 %
2007.12. 06	-	8.25	10. 27	0.25	7.00
2007.10. 25	-	8.25	3. 01	0.25	6.75
2007. 9. 13	-	8.25	2004.10.28	0.25	6.50
2007. 7. 26	0.25	8.00	9. 09	0.25	6.25
2007. 6. 07	0.25	8.00	7. 29	0.25	6.00
4. 26	0.25	7.7	7. 01	0.25	5.75
3. 08	0.25	7.50	4. 29	0.25	5.50
2005.12. 08	0.25	7.25	1. 29	0.25	5.25

이로 인해 2007년 12월 현재 뉴질랜드의 공금리(OCR)는 8.25%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호주나 미국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 자본의 투자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호주 등 외국계 은행으로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으며 2001년 문을 연 Kiwi Bank 만이 100% 뉴질랜드 자본으로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우리 나라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96년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97년 9월부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음

나. 은행 제도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준을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을 받게 됨. 뉴질랜드 금융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으며 이후 급속히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시장 규모가 확대와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자율과 환 위험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음

현재는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금융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금융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은행 업무 시스템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부실여신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다. 기타 신용기관

보험업으로 AMP, AXA(구 National Mutual), Colonial, NZ Insurance, Tower Corporation, Prudentials 등등의 보험 회사들과 소규모의 신용 대출 회사들이 있음

라. 변동환율제도 운영

뉴질랜드는 85년 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후 외환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방식의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외환시장도 완전히 개방하여 현재는 외환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음. 그러나 지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온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기조로 인해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 6월 11일, 1985년 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이래 최초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최근 끝없이 치솟고 있는 환율 (2007년 6월 29일 현재 NZD1 = USD0.77)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외환관리기구는 중앙은행(Reserves Bank of New Zealand) 이며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소요 외환을 조달하고 있음

마. 은행의 경쟁력

뉴질랜드의 5대 시중은행은 모두 외국은행이며 최근 정부 주도로 KIWI BANK가 설립됐으며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임. 뉴질랜드 은행들은 위기 발생시 외부 도움이나 개입 없이 자력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S&P 보고서에서도 뉴질랜드는 아-태 지역에서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은행 리스크가 가장 낮은 국가로 발표한 바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영국의 피치 (Fitch)사도 뉴질랜드의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는 조정사유에 대해 뉴질랜드가 국제 상품가격의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지난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지속적인 공공 부문 개혁과 민간 부문 투명성 및 효율적인 외채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높은 저항력을 갖춘 점을 조정배경으로 밝힌 바 있음

바. 외환시장 개입을 천명한 새로운 외환제도 전환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은 2004년 3월 17일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외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지난 1985년 자유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한 이후 한번도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중대한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3년 20% 절상에 이어 2004 년에도 가파른 절상추세를 이어오던 뉴질랜드 달러화도 외환정책의 변화와 함께 강세가 일시 둔화된 바 있음.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는 미국 달러화 약세와 함께 초강세를 지속해 2007년 6월 11일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여 6월 29일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NZ\$1=US\$0.77 의 강세를 보였으며 12월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Alan Bollard 중앙은행 총재가 그 동안 정책자료 발표를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뉴질랜드 달러화가 예외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사서 뉴질랜드 달러화의 절상을 막겠다는 지속적인 경고와 실제 개입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입 이후 불과 한 달도 안되어 변동 환율제 도입 이래 최고의 환율을 기록한 것으로서 향후 중앙은행의 대처 방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사. 자금 조달

1) 주식시장 (NZX)을 통한 자금 조달

- NZSX (New Zealand Stock Market):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007년 12월 현재 모두 169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음.
- NZDX (New Zealand Debt Market): 채권시장으로서 2007년 12월 현재 총 52개사의 채권이 등록되어 있음.
- NZAX (New Zealand Alternative Market): 중소규모 회사의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시장으로서 NZSX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 등을 상대로 함. 2007년 12월 현재 29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음.

2)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 전국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나 중앙은행의 연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당히 오른 상태이며 은행권 기업 신용대출의 경우 1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11%대임.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협소한 시장규모

제조업이 취약해 소비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인구가 4백만 명에 불과하고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남성과 북성에 흩어져 있어 수입 수요가 크지 않으며 품목별 마케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경제구조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50% 이상이며 개혁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고 한국과의 무역협상 시에도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수입자유화율이 높음

나. 소비자 특성

2006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US\$25,600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미국 달러의 약세로 인해 초래된 수치인데다 가구당 소득이 2006년 기준 NZ\$59,000이나 최고 39%에 이르고 있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임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함. 세일시즌을 최대한 활용하여 싸게 사려는 경향을 보이며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일반 시민들이 주로 선호하고 도시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첨단 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가 낮다고 하겠음

다. 한국상품 인지도

IT,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임. 그러나 시장개방 속에서 가격 위주의 실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진출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인구가 적어 수입규모가 작다는 점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라.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영업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지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시장 일부 고가 유명 브랜드 제품시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산품들이 무관세나 저율 관세의 영향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함.

전통적으로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최근 미국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마. 거래방식, 제품 선호도 및 상관습

인구와 시장규모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 소액주문이 주종을 이루며, 주문량이 적은 반면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주문회수가 비교적 많고 꾸준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도 비용절감을 위해 L/C방식보다는 T/T방식이 압도적임

보수적 상관습을 갖고 있으며 브랜드 제품이나 고급 품질의 제품을 찾거나 저가형의 제품을 선호하며 최근 중가 제품의 수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도 함.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소득에 비해 세금 공제후의 가처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고가품 시장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재의 구매 시점은 12월의 성탄절과 3-4월의 부활절 특수가 있으며 선물용품, 의류, 완구 및 전자 제품 등이 계절적 수요로 많이 판매되고 있음

바. 유통구조

유통구조도 과거의 전문 수입상-> 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에서 최근 대규모 수입상들이 일반 소비재를 직접 수입하여 대규모 소비자 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비교적 큰 수요가 요구되는 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소규모의 수입업체들이 해외의 수출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음

2. 물가정보

항 목	기 준	가 격(USD)
1. 임금		
1) 사무직(일반)	월 급여(대졸초임)	2,700
2) 사무직(비서)	월 급여(학력불문 초임)	2,200
3) 사무직(중간관리자)	월 급여, 한국기준 과장급	3,000
4) 생산직(일반)	월 급여(초임)	1,500
5) 생산직(중견)	월 급여, 엔지니어급,	2,000
6) 상여금	연간 %	N/A
7) 추가근무수당	평일, 휴일 %	150%
2. 통신환경		
1) 전화 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설치비 등 기타 비용	3
2) 전화사용료	월 기본요금, 3분(시내, 시외 평상시간)	27
3) 공중전화(시내)	3분(평상시간)	1
4) 국제전화(현지 - 서울)	3분(평상시간)	4
5) 휴대전화 개통비	가입비	30
6) 휴대전화사용료	월 표준기본요금, 1분(평상시간)	26.65기본
7) 인터넷 개통비	가입비, 장치비, 설치비 등 기타비용	165
8) 인터넷사용료	월 기본요금, 표준속도	20
9)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2~3페이지)	1
10) 국제우편(현지 - 서울)	일반편지, 1통, 10g이하	3
11) 특급우편(현지 - 서울)	DHL, 1개, 1kg이하	67
3. 자동차 및 교통환경		
1) 자동차(2000cc) 구입가	한국산 중형 기준, 오토기어(A/T), 에어컨	20,000
2) 일반휘발유(1L)		1
3) 경유(1L)		1
4) 자동차등록비(2000cc)		175
5) 자동차보험료(2000cc)	1년 계약, 신형차, 종합보험, 신규가입차	1,200
6) 지하철(기본요금)		NA
7) 시내버스기본요금		1
8) 택시(기본)	기본요금	1
9) 택시(추가)	추가요금(1Km당)	1
4.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1) [임차]중급아파트(150m ² /월)	침실3개 이하, Semi-finished	2,500

2) [임차]중급단독주택(150m ² /월)	대지 500m ² 미만 및 침실 4개미만 Semi-furnished	3,000
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없음
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개월치
5) 가정용전기요금(1kWh)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20
5. 의료·보험		
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300
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X, 몸살감기, 내과초진	60
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O, 몸살감기, 내과초진	20
6. 교육환경		
현지인 학교 (입학비, 기부금, 수업료)	초등 1년간	200
	중등 1년간	300
	고등 1년간	600
7. 레저, 오락		
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60
2) 골프장 회원권	매매가능 18홀 (고급)	10,000
8. 호텔		
1) 특급호텔(정상) - 5성급	싱글 1박	230
	트윈 1박	230
2) 특급호텔(할인) - 5성급	싱글 1박	110
	트윈 1박	110
3) 중급호텔(정상) - 3성급	싱글 1박	140
	트윈 1박	140
4) 중급호텔(할인) - 3성급	싱글 1박	70
	트윈 1박	70

3. 바이어 발굴

가. 신문 및 잡지 광고

- 시 개단 등의 경우 신문 및 잡지 그리고 교포 신문에 사업홍보를 통해 바이어 발굴
- The New Zealand Herald(www.nzherald.co.nz)
- 뉴질랜드 타임즈(교포 신문, www.nzkoreatimes.co.nz)

나. 기존 고객 등 개별 바이어 접촉

- 시 개단, 지사화 등 무역관 사업을 통해 관리되는 바이어를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
- 고객관리 및 신규 수요 발굴 그리고 새로운 거래선을 소개 받는 등 복합적인 업무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일정수준 검증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유용

다. 전시회 참관

-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및 동향 그리고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전시회를 참관하고 매년 6월 개최되는 남반구 최대 농업박람회는 직접 참가함으로써 유력 바이어 발굴

라. 주요 기관 접촉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아래와 같은 경제 유관 기관 및 단체 접촉을 통해 사업수요 확인 및 바이어 발굴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1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www.nzte.govt.nz
2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newzealand.govt.nz
3	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ema.co.nz
4	Waikato Chamber of Commerce	www.waikatochamber.co.nz
5	New Zealand Agritech	www.agritech.org.nz
6	Deer Industry New Zealand	www.nzgib.org.nz
7	FashioNZ	www.fashionz.co.nz
8	Fonterra	www.fonterra.co.nz
9	NZ Marine	www.nzmarine.com
10	Meat and Wool New Zealand	www.meatnz.co.nz
11	New Zealand Winegrowers	www.nzwine.com
12	Organics Products Exporters	www.organicsnewzealand.org.nz
13	New Zealand P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pine.net.nz
14	Plastics New Zealand	www.plastics.org.nz
15	Seafood Industry Council	www.seafood.co.nz
16	Software New Zealand	www.nzsa.org.nz
17	Textiles New Zealand	www.textilesnz.org.nz
18	Turners and Growers & ENZA	www.turnersandgrowers.com
19	New Zealand Trade Centre	newzealandtradecentre.com
20	Canterbury Employer Chamber	www.cecc.org.nz
21	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Association	www.apaa.co.nz
22	Business NZ	www.businessnz.org.nz
23	New Zealand Food & Grocery Council	www.fgc.org.nz
24	New Zealand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nzicecream.org.nz
25	Packaging Council of NZ	www.packaging.org.nz
26	NZ Juice & Beverage Association	www.nzjba.org.nz
27	NZ Bio	http://www.nzbio.org.nz
28	Marine Industry Association	http://www.nzmarine.com/
29	Boating Industry Training Organisation	http://www.nzmarine.com/
30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www.b-vital.com

마. 기존 고객 대상 발굴

- KOTRA 오uckland 무역관 홈페이지 인콰이어리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고객 및 해외고객의 발굴 및 거래 알선에 활용

바. 기업 디렉토리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 수시 업데이트 되어 온라인 제공되는 기업 디렉토리를 활용한 다양한 품목 및 분야의 바이어를 발굴, 시장개척단 및 지사화 등 무역관 사업에 활용
 - Yellow page: <http://www.yellowpages.co.nz>
 - Access New Zealand: <http://www.accessnz.co.nz>
 - UBD: <http://www.ubd.co.nz/>

사. 전시회 정보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 전시회 개최기관을 통해 참가업체를 확인하고 품목별로 이들 업체를 분류, 업무에 활용
- dmg world media (NZ) Ltd
 - 주소: Level 1, 99/107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PO Box 9682, Newmark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64-9) 976 8300 / 팩스: 64-9) 379 3358
 - 이메일: info@nz.dmgworldmedia.com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며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예절과 상거래 관행 특히 영국과 거의 비슷한 제도와 관행이 통용되고 있으며 세일즈 출장이나 상거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음

철저한 신용사회라는 점도 서구 일반의 경우와 대동소이하여 시간 엄수 및 약속의 성실한 이행 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신뢰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나. 수입관행- 현금거래 선호

통상의 수입 절차 및 관행과 일치하며 대금 결제방식은 L/C보다는 T/T로의 결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액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출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는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음

KIWI(뉴질랜드인 들을 통칭하는 언어) 수입상들이 L/C 대신 T/T나 현금거래를 원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이며 은행에서 L/C를 개설할 경우 거래금액의 0.3% 내외(대개 거래은행과 수수료 상한선에 합의하며 상한선은 대체로 NZ\$300불 내외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계로 이를 절약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되면 L/C개설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경향이 강함

실제 거래에서는 신용위주로 하고 있어 현금거래 방식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대만 등 여타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현금거래 방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방법은 사전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2차 분할송금 마지막 선적물품의 도착과 인도 시 잔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어 위험회피 성격도 반영되고 있음

다. 거래 유의사항

우리 제품에 대해서 경험해 본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국산 혹은 동남아 제품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가끔 나타나고 있으며 수요계층이 있는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고는 저가이면서 품질보증이 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실용적이며 사치에는 관심이 없고 실생활에 대한 기여를 거래우선으로 여기고 있음

최근 들어 자동차, 가전 제품들의 소개로 가격, 품질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사후서비스 미흡, 소량 주문 기피, 납기 지연 및 커뮤니케이션 지연으로 가격 및 품질 이외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일본이나 대만 등에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음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와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모는 작지만 뉴질랜드를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거래도 점증하고 있는 추세임

라. 비즈니스 에티켓

시간 엄수 및 약속 성실 이행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서구적인 생활방식과 비즈니스 사고가 거의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상거래 방식과 에티켓을 준수하면 되며 문화 혹은 관습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특별한 에티켓은 없음

마. 상담 유의사항

기존 거래선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할 경우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며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상당히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 어긋날 정도는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 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강함. 상대방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서는 권한과 책임 이 확실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바. 상담 체크포인트

1) 바이어를 감안한 상담준비

- 회사 PR자료 준비 (영문): 회사규모, 연혁, 재정상태, 생산능력 등
- 카다로그 및 견본 준비
- 복장: 상담 복장은 정장이 원칙
- 명함
- 오퍼 시트, 인보이스 양식 준비
- 메모지

2) 바람직한 바이어 접촉방법

□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성의 있는 자세로 상담에 응하고 바이어와의 눈높이 조절 및 의사소통을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 와 신뢰감 조성(최근 한국의 월드컵 및 현지의 럭비관련 대화가 유익함)

□ 시장특성 인지 및 신뢰

소량소액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한 상담으로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기한 준수를 포함,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행으로 거래 기본여건 조성

□ T/T 거래방식 선호도

소액주문으로 대금 결제조건이 L/C가 아닌 T/T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T/T의 이점을 살린 거래가 상당히 많으며 선호도가 매우 높음(L/C 수수료 문제)

□ 가격산정 및 적기 딜리버리에 주의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입상 또는 수출상이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검사가 필수 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비용을 감안하는 것이 거래에 유익함. 선편이 월 2-3회 이므로 딜리버리 스케줄 작성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유럽 업체와 거래 중인 업체와 상담 시 기존 거래선을 변경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확신과 엄수가 필수적임

시장 조사 시 소매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됨

□ 바이어 접촉방법 및 사후응대

많은 한국 업체들이 접촉방법의 미숙으로 거래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카다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조건, 제품 설명서, 샘플 등 제품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거래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음

□ 침착한 대응

뉴질랜드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1-2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구매 담당자가 해외 출장, 휴가, 외출 등으로 상당 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음

이로 인해 한국업체가 보낸 서류에 대한 검토도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 검토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당시에는 필요성이 없어 회신하지 않을 지라도 장시간이 소요된 후에 연락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편지를 보 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

□ A/S 및 신뢰성 유지

한국 업체들의 A/S나 클레임 해결 등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속되고 있어 거래에 따른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문량 부족 및 시장성이 떨어지는데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됨. 따라서 A/S나 클레임 해결을 통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지속적인 거래 및 물량확대 등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인구 4백만의 소규모 시장

뉴질랜드는 인구가 4백만이 조금 넘는 소규모 시장이고 그 중 상공업이 가장 발달한 오클랜드 광역권은 인구 백만 명이 조금 넘는다. 뉴질랜드 회사의 96% 정도가 직원 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1차 낙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3차 서비스 산업(관광, 유학)이 발달하였고 상대적으로 2차 제조업은 거의 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량 다품종 및 저가품 시장으로서 인구 규모가 적어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는 물론 품목별 수요가 많지 않고 소량 소액주문이 대부분이며 주문량이 적다.

나. 보수적 성향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값싼 단가를 이유로 여기저기 거래처를 옮기기 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동안 신뢰를 쌓아온 기존 파트너와의 거래를 지속하고 싶어한다.

반대로 이미 거래처가 있는 업체의 경우는 신규로 뚫고 들어가기에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점도 있다. 기존의 거래선이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 시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며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상당히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함

다. 저가품 선호

국민소득에 비해 세금 공제후의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저가품의 시장이 발달했다. 통계 수치상 1인당 국민소득은 US\$25,600에 달하고 있으나 소득세가 최고 39%에 달해 가처분 소득은 많지 않아 실용적인 중저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라. 소비재 특수

소비재의 구매 시즌은 12월의 성탄절 특수와 4월의 부활절 특수가 있으며 선물용품, 의류, 장난감류 및 전자 제품 등은 계절적인 수요에 많이 좌우되고 있기도 함

마. 결제 방법으로 T/T 선호

비용절감을 위해 대금 결제 방식은 L/C보다는 T/T로의 결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액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수출상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음. 하지만 첫 거래일 경우, L/C 를 오픈하는 것을 권장함.

바. 철저한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구비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회사 영문 카타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준다. 대부분 한국 제품하면 유럽이나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제품보다는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 위주로 초점을 맞추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좋다.

사. 회사 대표보다는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

회사에서 업무의 분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과는 달리, 회사의 직책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담당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담당자를 공략하는 것이 좋다. 담당자가 구매 결정권을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 부재 시나 휴가 시에는 업무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과 접촉을 할 때는 Managing Director 혹은 General Manager 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뉴질랜드 현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내 K사는 쓰레기 압축기계 전문 생산 업체로서 국내의 우수기업과 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고 우리 무역관에서는 뉴질랜드 쓰레기 처리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관련 정보를 업체에게 전달하고 있었음.

뉴질랜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는 있었으나 효율적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쓰레기 압축에 관한 관심이 일고 있었으며 이런 현상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있던 중 세 명의 현지 바이어들과의 연락에 성공하였으며 이들 중 K사의 요구에 따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바이어를 수 차례의 상담 및 협상을 통해 발굴하여 2006년 6월 사이버 상담을 통해 양 업체간 첫 만남을 성사시킴.

나. 현지 시장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AS

첫 상담 이후 K사의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인 바이어는 곧바로 샘플 주문을 내었고 K사도 신속하게 주문에 응하여 샘플을 받아 본 바이어는 쓰레기 압축 기계의 뉴질랜드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였으며, 또한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장치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에 현지화에 성공한 제품을 새로 개발함.

은행 지급보증서 수령 및 샘플기계 이상으로 인한 AS 처리 등 양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무역관이 중간에서 거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며 현지 바이어의 홍보를 돕고 있던 중 양사간 1차 선적분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어 10월 초 20대의 압축기가 오클랜드에 처음으로 도착함.

다. 성공적인 시장 진입

이와 같은 성공에는 한국 K사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의지와 바이어의 요구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결단력이 큰 몫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여타 외국의 압축기보다 가격 및 품질에서 뛰어난 우수한 제품의 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또한 뉴질랜드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현지 실정 및 법규에 맞는 기계의 개량과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력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 큰 몫을 함.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이주정착 개요

뉴질랜드 달러화의 지나친 강세와 2002년 11월 이민법 강화 및 2003년 7월 1일의 신 이민법의 국회통과 등으로 약간 줄어 2006년 3월 인구조사 기준으로 약 3만 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1) 외국인 투자이민의 제한 추세

2007년 6월 6일 발표된 신 투자이민법은 2005년 6월 발표되었던 이민법보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을 더 올림으로써 사실상 투자이민의 문호를 더 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투자이민법에는 모두 세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먼저 Global Investor 카테고리는 투자금액만 무려 NZ\$2천만 불 (최소 실제(Active) 투자금액이 NZ\$ 5백만 불)로써 4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IELTS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최소 정착자금과 나이제한 역시 없으며 다만 전체기간 중 매년 20% 이상의 뉴질랜드 체류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투자이민법과 또 다른 점은 예치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Professional Investor는 NZ\$1천만 불 (최소 실제 투자금액이 NZ\$2백만불)을 투자해야 하고, IELTS 4.0점의 영어점수와 4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필수이다. 나이제한은 최대 64세이고, 4년 중 매년 30%이상 뉴질랜드에 반드시 체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eneral Investor-Point System은 현재의 투자이민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4년 동안 NZ\$250만불 투자(Semi-Active), IELTS 5.0점, 최소 정착자금 NZ\$1백만 불, 최소 4년 이상의 사업경력, 매년 40% 이상의 뉴질랜드 체류가 필요하다. 또한 나이제한은 54세로 지금과 같다.

또한 장기사업비자의 수혜 등에 힘입은 초등학교 저학년 조기 유학생이 9천 여명에 이르는 등 한때 유학 대상국으로도 인기를 얻었으나 환율의 강세와 함께 사실상 장기사업비자 발급을 중지함으로써 주요 유학 대상국으로서의 인기를 잃고 있음.

2) 주택구입방법

주거 희망지역의 부동산업자를 접촉하여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불편한 경우 도움이 되고 있음.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함

등기소와 City Council에서 유료로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으며 그 사본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 등기 상태,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등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가급적 열람 하는 것이 안전함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하여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 권리 등을 정리하므로 변호사 선임도 고려 사항임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본인이 직접 하여도 되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도 가능함.

또한 임대료 계약하여 장기 또는 단기로 거주할 수도 있는데, 시내 APT와 가까운 거리의 일반 주택들도 임대 시장에 나와 있어 선택의 여지가 다양함.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 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중개수수료는 1주 임차료 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하며 보증금(BOND FEE)은 2주 또는 3주 해당 금액을 임대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예치하여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 비용의 변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며 임대료는 더 비싸고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음

통상 입주 때 부동산 업자만 만나거나 집주인과 대면을 할 경우에 입주 전의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주할 때 억울하게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 을 거래가격에서 할인 받는 지혜도 필요함

3) 계좌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이체 가능함. ASB, BNZ, Westpac, National 및 ANZ 등의 은행에 교민 들이 근무 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오uckland 지점(전화: 64-9-366-1000)도 개설되어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4) 전화 신청

각 지역의 Telecom회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바로 최소한 2~3 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당일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시기가 단축되고 있음. 요금은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Auckland지역 내에서의 사용은 무료이고 시외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됨

5) 비품 구입 및 사용

한국의 주로 APT생활 위주에서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정원 손질 도구와 사다리 등 집기가 많이 필요하게 됨. 또한 가전제품은 플러그 모양이 우리와 달라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며 240V로만 전력이 공급되어 100V용으로는 변압기를 필요로 함

TV와 VTR은 한국과 방송방식이 달라 구입시 NTSC 와PAL 방식 겸용의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 이 경제적임. 각 주택 지역별로 있는 SHOPPING MALL에 유명 체인점들이 입주하고 있어 가전 제품, 집기 및 가구 등을 선택할 수 있음.

자동차 역시 한국과 달리 운전좌석이 반대쪽에 있어 새로 구비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전문점, 수입상, 지역의 자동차 매매장 또는 경매장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저렴한 승용차는 교민 사이트를 통해 매매되기도 함

나. 자녀 교육여건

1) 기본적인 여건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거주지에 근접한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외국 유학생 및 이민자의 급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에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아예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적도 있었음

한국인들에게는 저학년 영어 교육 및 현지 연수 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아주 높고 유학하는 사례가 많으며 한국인 밀집 지역인 Takapuna와 Glenfield 등 오클랜드 북쪽 지역에서는 2002년 정원 초과사유로 입학이 불허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후 2002년 11월 이민법이 강화된 이후 이러한 현상이 많이 완화되어 2005말에는 이러한 현상 대신 학생수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으나 2002년 대비 70% 정도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진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에 따라 유학 대상국가로 경쟁 관계에 있는 호주나 캐나다 등 과 비교한 가격상의 이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국인들의 유학 및 연수대상지로 선호되고 있고 한국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학 연수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으며 일부이지만 저학년 학생을 1 Term (8주)동안 이곳 학교에 입학시켜 어학연수 겸 교육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음

국립 및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무상이지만(유학생 제외)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명 사립학교와 종교계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허가 심사 및 상당한 학비와 기여금을 지불해야 함

2)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고 있으며 입학시기와 학교 학년제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름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중학교는 2년, 고등학교는 5년이며 의무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대학교(University)와 교육대학, 기술 단과 대학인 전문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뉘어지며 종합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7개에 불과하며 모두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교임

전문대학은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25개교가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과정도 있으며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도 있음

교육대학은 전국에 4개뿐이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고 있고 2~4년 과정으로 구분되고 있음

3) 유아원/유치원

만 1세부터 Day Care Centre, 만 2세부터 Play Centre에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하고 있고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음. 물론 한국인도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있음

4)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교육을 시작하여 13세쯤 중학교(FORM 3) 과정에 입학하며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하이 스쿨 혹은 컬리지)가 있음

5) 대학교육

종합 대학교는 모두 7개가 있으며 모두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로서 Auckland, Hamilton, Palmerston North, Wellington(북 섬), Christchurch, Canterbury, Dunedin(남 섬)에 있으며 학교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음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3년에서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으며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Form 7을 마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 (Bursary)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됨

□ 뉴질랜드 종합대학

- University of Auckland(Auckland): 15,000명의 재학생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최대 대학
- The University of Waikato(Hamilton):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 Massey University(Palmerston North):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 Victoria University(Wellington): 행정수도인 Wellington에 있으며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 Lincoln University (Canterbury): 원예와 농업 우수
- University of Otago (Dunedin):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 The University of Canterbury(Christchurch): 공학 부문 우수

다. 현지 생활여건

1) 생필품 조달여건

현지 식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HOPPING MALL에 생필품 체인점(FOODTOWN, BIG FRESH, WOOLWORTHS, COUNT DOWN, NEW WORLD, PAK'N SAVE, WAREHOUSE,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음. 야간에도 생필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즈음은 이전과 공휴일 없이 매일(OPEN 7 DAYS) 개장하는 매장이 많아 한국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은 어려움이 없는 편임

할인점과 백화점 등 다양한 업태가 있으며 인근에 야채가게 과일가게 등이 많이 있으며 상당수 매장들이 저녁 7시경 문을 닫기는 하지만 구입 가능한 매점도 많아지고 있는데 24시간 내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식품 도매체인 FOODTOWN이 대표적임

2) 한국식품 조달 여건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기타 국산제품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러 형태의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싸지만 생필품의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이 대부분의 품목을 구매할 수 있음

오클랜드에는 김치공장도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김치가 수입되고 있고 오클랜드 시내에는 물론 인근에 수십 개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매점)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화의 초 강세가 3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가격도 인하되었으며 라면을 비롯 고추장, 된장은 물론 기타 한국식품의 구입이 가능하며 식품, 양념을 포함한 생필품 대부분을 구입할 수 있음(만두, 떡, 제과 등도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음)

Hamilton, Wellington, Christchurch, Rotorua 등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클랜드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다 오클랜드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 밀집된 한국 식당가도 형성되어 있음

3) 레저 여건

지역별로 축구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많고 저렴한 골프장이 바다에 인접하여 있어 골프와 낚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음.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 스키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4) 치안 상태

치안 상태는 한밤중의 외출은 물론 양호하여 현지 체류와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퇴근 후에는 외출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부 동양인들과 유학생 정도가 시내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외출하고 있음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대부분 2대 정도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야간에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어두운 곳이 많아 시내 중심가의 관광객들을 제외하고는 현지인들의 외출은 뜸한 편임

최근 낮에도 빈집을 터는 좀도둑이 늘고 있어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으나 사회 분위기는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임. 그러나 야간에는 외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음.

8.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특성 (12-3월이 최상의 기후여건으로 관광시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며 온대성 기후이면서도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은 서안해양성 기후로서 연평균 12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온화한 편임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러워 겨울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맑은 날씨였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도 자주 불고 있고 일부 산악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하며 여타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기후특성을 보임

봄과 여름 및 가을은 괜찮으나 겨울 초입부터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상당히 떨어지며 일반 주택도 한국과 같은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전기 히터나 가스 히터를 사용해야 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장판을 이용하는 등 겨울 추위에 대비하고 있을 정도임

한국과는 반대로 겨울은 6월-8월이며 강수량도 이 시기에 집중되나 이후 점차 일몰시간도 길어지고 날씨도 온화하고 쾌적해 아침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출장 등에 아주 쾌적함

또한 매년 10월초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는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행되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제조업이 취약하고 서비스 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뉴질랜드는 통상 5시경 업무가 종료되어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함

서안해양성 기후로서 서풍이 부는 바람의 특성과 북동에서 남서의 방향으로 위치한 산맥의 영향으로 인하여 동서의 강우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대 상업도시 오클랜드는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한 편에 속하며 남섬 끝에 위치한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몹시 강하며 넬슨지역은 일조시간이 가장 길고,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강우량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여 주고 있음

9월 중순 현재는 봄이 시작되는 시기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하며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어 활동하기에 쾌적하고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고 비도 자주 내리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나. 주요 도시의 기후

도시	1 월		7 월		연평균강우량
	최저	최고	최저	최고	
Auckland	19.4	23.1	10.9	14.1	1,105
Christchurch	16.6	21.5	5.9	10.3	645
Wellington	16.4	20.0	8.2	10.9	1,270
Dunedin	15.0	19.0	6.4	10.9	800
Hamilton	17.8	23.9	8.3	13.5	1,180

다.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월-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한국과 정반대이며 비가 많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방문도 많이 줄어드는 기간이어서 출장 시에도 한국의 추 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며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기도 함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부터 익년 3월 셋째 일요일에는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s)를 실시하고 있어 일조시간이 가장 긴 12월말 에는 저녁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며 Mission Bay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에는 인파로 붐비게 됨

일반적인 기후 여건으로는 여름에는 낮에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한 반면 밤에는 선선하며 겨울에는 온도가 낮지 않아도 쌀쌀하고 음산한 날이 많기 때문에 11월-3월에는 관광 시즌일 정도로 기후여건이 좋으며 출장 추천복장으로서는 춘추복이면 무난함

2. 시차/근무시간

가. 한국과의 시차(+3)

한국과의 시차는 KST+3시간이며 한국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이 기본임. 10월 2일부터 하계기간(10월 첫째 일요일~3월 셋째 일요일)으로 일광절약제도(Day Light Saving)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되어 한국 12:00가 뉴질랜드의 16:00임

2007년 3월 셋째주 - 2008년 10월 첫째주: 시차 3시간
2008년 10월 첫째주 - 2009년 3월 셋째주: 시차 4시간

나. 근무시간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시간은 09:0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 근무시간은 업무특성상 09:00-16:30임.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증가 및 이들의 영업시간 확대 및 연장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슈퍼는 20:00 또는 21:00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2시간 일찍 영업을 마치는 상가가 많아지고 있음

최근 들어 쇼핑센터 등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휴일에도 개점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Countdown, FOODTOWN 등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

정부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31 일까지임(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1-12.31 혹은 7.1-6.30을 택하기도 함)

근무시간

관청	월-금	08:30 - 16:30
은행	월-금	09:00 - 16:30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대형쇼핑몰 (Westfields)	월화수/금/토	09:00 - 18:00
	목	09:00 - 21:00
	일	10:00 - 17:30

3. 도량형

가. 미터법의 사용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40V 50HZ 3PIN 플러그를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음

넓이	평	에이커(acre)	제곱야드(yd²)	제곱피트(ft²)	아르(a)	제곱미터(m²)
1 m²	0.3025	0.00025	1.196	10.7683	0.01	1
1 a	30.25	0.02471	119.6	1076.83	1	100
1 ft²	0.0281	0.00002	0.111	1	0.00093	0.09287
1 yd²	0.2529	0.00021	1	9.0038	0.00836	0.83614
1 cre	1224.2	1	4840.04	43578.7	40.4693	4046.93
1 평	1	0.00082	3.95367	35.598	0.03306	3.3058

길이/거리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센티미터(Cm)
1 cm	0.000006	0.010936	0.0328	0.39370	0.01	1
1 m	0.000621	1.093613	3.2808	39.3701	1	100
1 inch	0.000016	0.027778	0.0833	1	0.0254	2.54
1 foot	0.000189	0.333333	1	12	0.3048	30.48
1 yard	0.000568	1	3	36	0.9144	91.440
1 mile	1	1760.00	5280.0	63360.1	1609.4	160935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는 전기 면도기 사용을 위해 주목할 것은 플러그의 모양이 다르다는 점인데, 접지 연결부의 유무에 따라 두 개 또는 세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지 구매 혹은 사전 준비가 필요함

	한국	뉴질랜드
전기규격	220V용 둥근 핀(Pin)	230V용. 3개의 일자Pin
사용시	110볼트 AC 소켓(20와트)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전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멀티볼트가 아니라면 어댑터나 변압기가 필요함	

나. 높은 가격의 공산품

전자 제품들의 전기 규격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 제품도 뉴질랜드에서 사용 가능 하지만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해야 하며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취약해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제품도 현지에서 구매할 경우 예상외로 고가인 경우가 많음

가령 플라스틱 가정용품이나 소형 건전지 학용품 등이 대표적이며 수요가 많지 않아 소량 판매 및 높은 마진을 붙인 유통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구조상 대부분의 판매점이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다. 현지 구매 가능성 파악 필요

한국산 전기용품 등은 직접 사용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이민자들이나 장기 체류자들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필요한 트랜스를 사전에 구입, 이삿짐과 함께 이곳으로 운반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민자가 많은 관계로 전자상가에 가서 뉴질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트랜스를 요청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즈음 한국 식품점 등에서도 필요한 트랜스를 판매하고 있어 현지에서 구입할 수도 있음

4. 출입국/비자

가. 여권 및 비자

뉴질랜드 출장 및 여행에는 출국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류에는 방문비자가 필요함. 뉴질랜드 공항에서 90일 방문 허가 (Visitor's Permit)를 받을 수 있으며 친척 및 친지 방문, 여행과 90일 이내의 학업, 스포츠와 소득 없는 문화 활동 또는 사업이 가능함

나. 비자면제협정 체결

비자 면제협정에 의하여 단기 여행(90일 이내)은 비자가 면제되며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비자 없이 취업할 수 없음.

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부 (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전화:(02)730-7794]

다. 까다로운 세관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병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세관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빈번한 사례중의 하나는 식품(멸치, 미역 등)과 골프용품 등이 대상이며 건어물은 밀봉이 되면 상관이 없으나 가능하면 식품은 세관 신고 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 적발되면 벌금부과는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름

골프 신발 등 골프용품에 흙이 붙어있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입물품 허용한도는 담배 200개피(1보루),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됨

보다 자세한 출입국관련 정보나 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는 뉴질랜드 검역청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국 시에는 1층에 소재한 은행 등 임의 장소에서 NZ\$25의 공항세를 납부하고 출국 절차를 밟은 다음 공항 2층으로 올라가면 출국수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사무소나 요원에게 문의하면 됨

라. 무비자 입국 주의사항

우리나라 여행객이 뉴질랜드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뉴 한국대사관에서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도 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신고서에 여행목적은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뉴질랜드 이민국은 자국 안보를 위한 테러인의 입국 봉쇄를 위한 입국심사 강화조치 이외에도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경비가 충분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자 가운데, 입국 후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사증 협정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특히 입국목적은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로 한다든지 짐을 직접 꾸리지 않았다고 표기하거나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은 오해를 살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함

5. 환율/환전

가. 화폐 단위

뉴질랜드 달러(NZ\$)로서 NZ\$1은 100Cents이고 주화는 10,20,50Cent와 1, 2Dollar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 Dollar가 있음

나. 환율

98년 이후 아시아 경제권의 금융위기, 세계경제와 자국의 경기침체, 경상수지 적자, 미국 달러 강세로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왔으나 2002년 초부터 자국경기 회복 및 6년만의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평가절상 되기 시작하였음

2005년까지 3년 여간 70% 이상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져 3월에 22년만의 최고 수준인 NZ\$ 1 = US\$ 0.74에 달한 바 있으며 이후 잠시의 조정기를 거쳐 2007년 6월 29일 기준 NZ\$ 1 = US\$ 0.77이며 우리나라 원화와는 NZ\$ 1 = 712.71원임



그 동안의 평가절상은 자국경제의 호조 이외에 세계적인 미국 달러화 약세와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높은 이자율(기준금리 8.0%)에 따른 외국 투자 자금 유입 그리고 뉴질랜드의 안정적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최근 경제가 지난 3년간의 하강 국면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이 힘을 얻으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다. 환전

환전은 평일 영업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변화가의 은행 환전소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함. 대부분의 경우에 환전수수료는 없음.

뉴질랜드에서 US\$10정도만 되면 거의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현금소지는 많을 필요가 없으나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수준 현금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환전환율은 상이해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필요금액을 공항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할 경우는 US\$100 정도의 최소 필요금액만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 경우 10%정도 불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요즈음은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호텔은 물론 쇼핑 기타 현지에서 필요한 지출을 할 경우 미국 달러화는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과거보다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유흥업소에 서는 미국달러와 뉴질랜드 달러화의 환전비율을 동일하게 처리하려는 경향마저 대두되고 있음

라. 신용카드 사용

뉴질랜드에선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호텔과 은행, 일부 상점에서는 여행자 수표를 이용 가능함. 신용카드에 개인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을 인출 가능함.

6. 교통/통신

가. 교통 및 통신 개요

인구가 많지 않고 국토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대중교통 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남섬과 북섬을 연결하는 항공, 해상, 철도 그리고 육상편의 공급이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국내에서의 화물 운송 시에도 해상편이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남북 섬을 운항하는 선편 (Inter-Island Ferry Services)을 이용하여 육상, 철도 화물이 이동되고 있음.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5백여 만대에 이르고 있어 인구대비로 볼 때는 많은 차량이 있는 편이며 1가구 2차량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의 부재와 불편에 기인하는 면이 큼

2003년 7월 들어서는 시내(수도권)의 획기적 재편과 교통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뉴질랜드 역사의 재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까지 명명되고 있는 브리토마트 재건사업이 완료되어 최대도시 오클랜드에 열차 문화권 형성과 교통, 휴식 및 쇼핑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난 바 있음

2003년 7월 7일 10여 년에 걸친 역사적인 Britomart내 열차의 첫 진입에 이어 이제는 해마다 증가하는 오클랜드 인구와 이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교통시설 재건을 목표로 한 대단위 사업이 마무리되어 오클랜드 지역 열차, 버스, 페리 등 전 교통 수단을 하나로 묶는 연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동전화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New Zealand Telecom과 Vodafone 가입자수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며, 가구의 54% 정도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35%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21%에 달하고 있음.

나. 뉴질랜드 항공노선

뉴질랜드는 10월 2일(일)부터 3월 중순까지 일광 절약제(Energy Savings)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과의 시차가 기존의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되며 해당 기간에는 출발 및 도착 시간의 자연 변동이 있음. 뉴질랜드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26개사로 국영 AIR NEW ZEALAND와 호주의 Qantas, 일본 JAL 그리고 CX, Singapore Air Line 등이 있고 대한항공(직항)도 운항하고 있음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 관계로 연중 항공권 구입이 어려운 지역중의 하나로 사전에 티켓 확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현지 관광여건이 좋은 여름(보통 11월말~3월말)에는 특히 티켓확보가 어려우며 한국의 방학에도 여학 연수생이 많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고 있음

직항인 대한항공보다 조금은 저렴하나,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OSAKA공항과 Narita공항을 경유는 Air New Zealand항공사의 비행은, 매일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대가 틀림.

Tokyo-Narita Airport – Auckland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6:25pm	09:15am ⁺¹	 NZ0090	10h50m	Wed, Thu

Auckland – Tokyo-Narita Airport Thu 22 Nov 2007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8:30am	04:40pm	 NZ0099	11h10m	Mon, Tue, Wed, Thu, Fri, Sat, Sun

Osaka-Kansai Airport – Auckland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6:30pm	08:15am ⁺¹	 NZ0098	10h45m	Mon

Osaka-Kansai Airport – Auckland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9:00pm	10:45am ⁺¹	 NZ0090	10h45m	Wed, Thu

Auckland – Osaka-Kansai Airport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7:40am	03:40pm	 NZ0097	12h00m	Mon, Sat, Sun

뉴질랜드내 제일 큰 도시 Auckland와 남섬의 대표도시 Christchurch의 비행 스케줄은 하루 30여 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약 편도 NZ\$300 (One Way)정도임.

예약은 www.airnewzealand.co.nz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으로 가능함

다. 우리나라와의 교통(항공편)

대한민국 인천과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28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오클랜드간 신규 취항을 개시 하였으나 2005년 3월 1일부로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중단함

1) 대한항공

매일 1편씩 운항하고 있으며 금년 4월초부터 시간이 변경되어 인천-오클랜드는 매일 1회씩 7편(KE823) 운항되며 19:20에 출발, 익일 09:40에 도착하며 오클랜드-인천은 매일 11:20에 출발(KE824), 당일 20:20에 도착함(<http://www.koreanair.co.nz/flights.htm>)

Flight	M	Tu	W	Th	F	Sa	Su	Departure	Arrival
KE0823	→	→	→	→	→	→	→	19:20	09:40+1
Flight	M	Tu	W	Th	F	Sa	Su	Departure	Arrival
KE0824	→	→	→	→	→	→	→	11:20	20:20

라. 국내교통

1) 택시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함. 공항에서 다운타운 구간을 택시로 이동할 경우, 도로 상황 및 이용 택시 회사에 따라 시간 과 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45 에서 \$80 사이로 교통 상황에 따라 약 30분 걸림.

택시는 시내 중심가의 일부 택시정류장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전화로 호출하는 콜택시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되며 요금은 택시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요금 NZ\$ 2.00 + KM 당 NZ\$1.95 정도이며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임

2) 버스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 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분-1시간으로 운행 회수가 적고 운행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택시 이용이 편리함

3) 공항버스

뉴질랜드의 모든 국제 공항에는 셔틀 버스가 있으며, 국내선 공항에도 대부분 셔틀 버스가 운행함. 따라서 숙소 또는 여행지의 중심 상가지역에서 공항 셔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셔틀 버스 회사는 융통성을 발휘해 승객의 숙소까지 운행함.

4) 철도

뉴질랜드의 선로망은 별로 많지 않지만, 철도를 이용한 관광 코스에는 그 풍경이 환상적인 코스가 몇 개 있는데, 도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기차를 통해 만나 볼 수 있음.

바. 국제통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 (국제 전화번호)+ 82(한국 국가번호)+2 (서울 지역번호) + 해당 전화번호 (예: KOTRA 본사: 00 + 82 +2+3460-7114)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 001 또는 002 +64(뉴질랜드 국가번호) + 9 (지역번호) + 해당 전화번호 (예: 오클랜드 무역관 1) 한국통신: 001 + 64 + 9 + 373-5792)

한국으로의 콜렉트 콜은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000-982-0)을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으며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이외에 현지에서 유용한 방법은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수많은 국제전화 카드가 통용되고 있으며 시내전화를 이용해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카드도 다양함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월드폰, 이코노폰(문의 및 신청: 366-0533)을 비롯하여 SMART LINK(문의 및 신청: 309-6360) 등 다수이며 오클랜드-서울 통화가 분당 10센트 내외로 저렴하며 US\$10-20 정도의 전화 카드를 구입하면 8-10시간 통화가 가능한 것이 보통임

사. 국내통화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이용이 아주 불편함.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 가능.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 이 가능하며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임

공중전화 사용은 먼저 수화기를 들고 시내 통화는 전화번호 버튼을 누른 후 전화기 전면 설치된 스크린의 메시지에 따라 동전이나 카드를 집어넣으면 통화가 가능함

아. 인터넷 사용환경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수 있음. 5성급 호텔에 대부분의 객실 내에 인터넷 시설이 되어 있으며 또한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인터넷 카페가 많이 있으며 대부분 한국어 버전도 공급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함. (1시간 US\$2)

자. 특사운송회사 가격 및 사용 방법

가장 손쉽게 특사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NZ Post 를 이용하는 것임.

- 연락처
 - 웹사이트: www.nzpost.co.nz
 - 가까운 지점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113 355
 - 국제 특사운송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736 353

2) 가격

Weight	Australia (Zone A)	South Pacific (Zone B)	East Asia & North America (Zone C)	UK & Europe (Zone D)	Rest of World (Zone E)
0.5kg	\$20.40	\$36.40	\$41.70	\$42.60	\$52.10
1kg	\$26.20	\$38.00	\$52.80	\$52.30	\$70.40
Over 1kg	Documents over 1kg are charged the same as merchandise pricing. Prices are available on the Rate Finder .				

주: 1kg 내외의 서류 발송시 (1~5일 이내 도착)

7. 호텔/식당

가. 호텔 여건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 많고 모텔도 많아 숙박시설 이용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나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어느 정도 부담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성수기에는 호텔이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11월-3월 까지는 시내 호텔은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광객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음

관광시즌이 시작될 경우는 예약 여건이 좋지 않으며 고급호텔이나 모텔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수요증가보다는 계절별 상이한 수요로 인해 수용여력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데 따른 상대적인 부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함

나. 필수적인 예약 관행

높은 인건비로 인해 호텔 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일정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있음

무역관에서도 현지 출장이나 업무유관 방문객들에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즈음은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모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접촉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 참고 및 유의사항

관광시즌(11월-3월)의 경우와 주요 행사가 있는 경우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절요인을 감안하여 숙박 시설을 크게 확충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있음

일례로 2002년도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바 있는 아메리카 컵 요트대회 개최 때에는 호텔 등 대부분 숙박시설의 예약이 불가능해서 비즈니스 출장 및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으며 대형 행사나 여행객이 몰릴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관광 성수기에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일반 출장에는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호텔 이외의 민박이나 모텔 등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장 목적으로 한 호텔을 시내가 아닌 외곽지역에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모텔 등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예약이 불가능(NO VACANCY)하거나 객실요금이 최악의 경우 2배정도 비싸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기간을 피하거나 부수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음

라. 호텔예약 안내

한국의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있어 정보 입수 및 예약자체가 어렵지 않음.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도 처리하고 있고 여행정보 및 호텔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 (www.nz-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월-3월이 비싼 편이어서 일반수준의 예시이며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내외에서 변동 가능함을 참고 요망.

고급 호텔 중 하나인 Stamford 호텔이 건물 증개축 공사하며 운영하고 있음.

주요 호텔 및 연락처

호텔명	주소
	연락처
The Stamford (신축공사) ★★★★★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09 8888, FAX : (64 9) 379 6445
Rendezvous Hotel ★★★★★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 9) 366 3000 FAX : (64 9) 366 0121
Sky City Hotel ★★★★★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 9) 912 6000 FAX : (64 9) 912 6010
Hyatt Regency ★★★★★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 9) 355 1234 FAX : (64 9) 303 2932
Langham ★★★★★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 9) 379 5132 Fax : (64 9) 377 9367
Plaza Int'l ★★★★★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 4) 473 3900 Fax : (64 4) 473 3929
Parkroyal Hotel ★★★★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 4) 472 2722 Fax : (64 4) 472 4724
Copthorne Plimmer ★★★★★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 4) 473 3750 Fax : (64 4) 473 6329
Millennium Hotel ★★★★★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 3) 365 1111 Fax : (64 3) 365 7676
Centra Hotel ★★★★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 3) 365 8888 Fax : (64 3) 365 8822 -
Parkroyal Hotel ★★★★	Cnr. Kilmore & Durham Sts., Christchurch Tel : (64 3) 365 7799 Fax : (64 3) 365 0082
Millennium Hotel ★★★★★	Cnr Frankton Rd. &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 3) 441 8888 Fax : (64 3) 441 8889
Gardens Parkroyal ★★★★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Novotel Hotel ★★★★★	Sainsbury Rd. Fernhill, Queenstown Tel : (64 3) 442 6600 Fax : (64 3) 442 7354
Millennium Hotel ★★★★★	Cnr Eruera & Hinemoaaru St., Rotorua Tel : (64 7) 347 1234 Fax : (64 7) 348 1234
Novotel Hotel ★★★★★	11 Tutanekai St. Rotorua Tel : (64 7) 346 3888 Fax : (64 7) 347 1888
Rydges Hotel ★★★★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 7) 349 0099 Fax : (64 7) 349 0900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호텔 외에 모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모텔은 주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가족들 여행시 많이 찾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Vacancy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히 예약을 해야함.

모텔 연락처

Rock Field	100 Rockfield Rd. Greenlen. Auckland Tel: (64 9) 579 4525 Fax: (64 9) 579 7403
Aristotles	Corner Link Dr & Sunnynook Rd. Auckland Tel: (64 9) 444 1177
Takapuna Golf Lodge	27 Ocean View Rd. Northcote Tel: (64 9) 419 8080
Northland Motel	232 Main North Rd. Papanui .Christchurch Tel: (64 3) 352 8478
Rotorua Gate Motel	1322 Hinemoa St.Rotorua Tel: (64 7) 348 1623
Tauranga GardenCourt	44 Sixteenth Avenue. Tauranga Tel: (64 7) 578 5858

마. 식당 개요

현지 식당은 NZ\$ 10 내외의 FAST FOOD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 하고 24시간 영업하는 일부 카페를 제외하고 영업시간은 11:30-15:00(점심) 및 18:00-21:00 이나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임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5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Queen Street 끝에 20여 개의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는데 유익함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나 아쉬운 점은 중국, 일본 식당 등과 비교해 볼 때 고급 음식점이나 연회석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일부 음식점만이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임

가격은 한국보다 약간 비싼 수준이며 특히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2-3년 전보다 부담이 되는 반면 식당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학생과 한국에서 여행 및 비즈니스 출장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한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교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태의 식당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식당의 개점이 매우 활발한 편임

바. 주요 식당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나 대형 음식점이 없이 분식점 형태에서 중소도시의 일반 식당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던 때와는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감 소가 지속되고 있어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Auckland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한국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및 특징
미가	09-377-9131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낙원	09-369-1900	시내에 위치하고 연중 무휴 개업
The Koreans	09-355-6770	뷔페 식당으로 해변에 위치
부뚜막	09-309-5060	476 Queen St. City/ 감자탕, 아구찜, 찜닭, 칼국수, 냉면
왕릉갈비	09-444-0092	43-51 Downing St. Glenfield/ 갈비, 영양탕, 감자탕, 굴밥
전주식당	09-309-2775	4 Upper Queen St. City / BBQ 뷔페

중국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Ding How	09-358-4838	55 Albert Street
Grand Harbour	09-357-6889	Viaduct Harbour 18-28
Sunshine	09-302-3322	39 Market Place, Viaduct Harbour
Dragon Boat	09-379-6996	7-37 Elliot St. City
New Orient	09-379-7793	20 Elliot St. City
취선루	09-444-9987	20 Link Dr. Glenfield ,한국인 경영
태화루	09-488-0166	25 Shakespear Rd. Millford, 한국인 경영
야루끼	09-838-4463	385 Great North Rd. Henderson, 한국인 경영
이화원	09-489-1800	72-78 Hurstmere Rd.Takapuna, 한국인 경영

일본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ARIAKE	09-379-2377	Cnr Albert & Quay Streets
DAIKOKU	09-302-2432	48 Quay St
NIKKO	09-309-8266	239 Queen St., 한국인 경영
GENJI	09-360-5050	26 Ponsonby Rd., 한국인 경영
Katsura	09-366-3000	Cnr Mayoral Drive & Vincent Street
Soto Japanese Garden Restaruant	09-360-0021	17 St.Mary's Rd. Ponsonby 10 NZ Restaruant's 순위에 오름
Zipangu	09-376-4565	45 Ponsonby Road. Auckland
Wagamama	09-359-9266	1 Courthouse Lane.CBD

European 식당

Sails	09-378-9890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Soul	09-356 -7249	Viaduct
Aquamatta	09-302-0478	2A/48 Courthouse Lane
Toto	09-302-2665	53 Nelson Street
Orbits	09-363- 3000	Skycity Hotel
Angus Steak House	09-379-9815	35 Albert St.City
Mecca	09-358-1093	85 Customs Street West
Harbourside	09-307-0556	1 st Floor. Ferry Bldg. Quay St
Pompino	09-309-3559	Cnr Quay & Queen St.
Prego	09- 376-3095	226 Ponsonby Rd.Ponsonby

8. 관공서 관행

가. 모범적인 행정조직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행정조직 체계 및 운영으로 정평이 나 있음. 2001년 부패지수가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정도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은 물론 기업 등 사회 전체가 부정이나 비리는 없는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1980년대의 모범적인 행정 개혁을 단행한 국가로서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 성향도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식이 이러한 부정이나 부패와 거리가 있는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음

전자정부 구현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발표된 미국 브라운 대학 평가에서도 뉴질랜드는 전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2위에 선정될 정도로 정부의 행정 업무에 대한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음

나. 높은 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이 높으며 상급자도 업무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업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면담은 미리 약속을 해야 하며 (창구 업무 제외) 청렴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만인 앞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로서 차별이나 시혜를 보기 힘들며 정보도 항상 공개되어 있어 민원 소지는 극히 낮음

다.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일설에 과거에는 이민 기타 관련업무를 처리하면서 한국인들이 제출하는 공문서는 물론 사적인 문서나 신청서 등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이민자가 쇄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에는 성실성과 정직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어 신청서류나 증빙서 등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함

9. 공휴일

가. 휴일 지정방식

2007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Waitangi Day와 Anzac Day는 요일에 관계 없이 그 날이 휴일이며 나머지 공휴일은 금 또는 월요일로 지정되는데 신정과 성탄절 휴가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이월되고 있음

역사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월에 불과해 10월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일 정도이나 주 5일제 근무와 정시 퇴근이 일반화되어 있어 노동강도는 약함

2007년도 공휴일

공휴일 명	공휴일	공휴일 내용
New Year's Day	1월1일-1월2일	신정연휴 2일
Auckland Ann Day	1월 29일	오클랜드/ 북섬 기념일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 조약 체결일
Good Friday	4월6일	부활절
Easter Monday	4월9일	부활절
ANZAC Day	4월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4일(첫째 월요일)	영국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2일(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26일	크리스마스 익일

나. 출장 지양기간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기간은 없으나 부활절 연휴 (4월 18-25일 전후)는 관공서, 은행, 일부 대기업 등에서 1주일 전후의 휴가 기간을 가지며 사기업의 경우 2주일 정도 휴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연시인 관계로 휴무인 업체들도 많고 여름 휴가 기간이라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추진도 어려울 경우가 있음을 참고해야 함. 이외에 지역별 공휴일은 해당지역만 하루씩 기업 및 공공기관이 휴일인 경우도 있음을 참고 요망

10. 여행시 유의사항

가. 전반적인 유의사항

뉴질랜드는 유럽성향의 선진국가로서 치안도 안정되어 있고 관광국가로서 외국인이 여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만큼 사고나 건강의 이상 혹은 여행 도중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한국관련 기관의 연락처나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지인들의 성향을 파악해 두는 기본적인 유의사항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나. 의약품 구입 및 병원활용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Chemist나 Pharmacy에서 구입할 수 있고 관광지와 호텔에서는 구급병원 및 약국의 연락처를 수록한 관광안내 책자를 무료로 제공 하고 있어 이용이 가능하며 사고가 날 경우 국가에서 사고보험으로 치료해 주지만 손해 배상제도는 없음을 참고 요망

다. 국민성향 및 생활태도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음. 교통질서나 줄서기 등을 위반하면 전혀 무관한 시민 또는 행인으로 부터 지적을 당해 낭패를 볼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친절하지만 금전에 관한 한 외국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진을 찍어 두거나 증인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것은 한국과 별로 다르지 않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아주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면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고,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임

Mr, Mis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지칭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을 부르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하며 심지어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성이 있음

뉴질랜드 식 영어발음이 알아 듣기 힘들 때도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주도록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음.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선물제공 및 현지인 대응

한국을 알릴 수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면 좋으나 뉴질랜드는 Manuka 꿀을 비롯한 다 양한 건강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한국의 특산품이 많이 선호되지는 않고 있으며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책자, 비디오 테이프, 한국노래 CD 등이 실용성에서 뒤쳐질지 모르나 생 동감 있고 색다른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음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교류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아시아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 아시아 반 이민감정을 가진 현지인이나 유럽 이민자들을 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음

마. 현지기관 접촉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급자는 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며 매우 친절하지만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님. 공무원의 청렴도가 세계적인 수준(2003년도 핀란드에 이어 2위)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모범적인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상 뇌물제공 등을 통한 편의기대는 통하지 않음

11. 유용한 연락처

가. 행정 수도의 별도 위치

주 뉴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도시 오uckland(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uckland 분관(분관장 강준형)이 소재해 교민 및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음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 여명의 교민 대부분도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 3대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음

나. 유용한 연락처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신문(인터넷 서비스 동시제공)인 뉴질랜드 타임즈, 한국신문 등을 활용하면 주요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함

1) 공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64-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64-9)379-0818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Auckland	64-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64-9)914-2000
국민은행 (Kookmin Bank)	Auckland	64-9)366-1000
재뉴 한인회	Auckland	64-9)309-6001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64-3)379-2755
재뉴 한국교민회	Wellington	64-4)478-0688

2)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 화재, 경찰, 구급: 111
- 교통정보: 0900-33-222(Transit NZ)
- 전화번호 문의: 018 (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

12. 관광 명소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국가로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연간 12만 명에 이르고 있어 뉴질랜드의 5대 관광국가에 들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임

관광국가이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상품이 있고 이곳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 관광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Rotorua)에서는 1박 정도에 그치고 일정의 상당 부분을 남섬 에서 보내는 관광일정을 보내고 있음

가. 북섬

1) 노스랜드/ 베이오브 아일랜드 (Northland/Bay of Islands)

□ 파이히아(Paihia)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는 베이 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며 베이 오브 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이곳에서는 유람선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함

□ 와이탕이(Waitangi)

와이탕이 조약(hyperlink-about nz)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음. 1840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왕실이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음.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며 또한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음

□ 러셀 (Russell)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분 정도 소요됨. 19세기 초 선원들과 상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음

□ 케리케리 (Kerikeri)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함.

베이 오브 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텐 하기에 아주 좋음. 대부분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 새 들, 바다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음

2)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소재가 있는 상업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대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이들을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음

○ 오클랜드 주변의 관광지

- Auckland Domain
- 전쟁기념 박물관
- 식물원(winter Garden)
- 동물원(Auckland Zoo)
- Western Springs Lakeside
- One Tree Hill
- 콘월 공원(Cornwall Park)
-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 에덴 동산(Mt. Eden)
- 지하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 홉슨 부두 해상 박물관 (Hobson Wharf Maritime Museum)
-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 마운트 이든 (Mt Eden)
- 데본 포트 (Devon Port)
-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 해상페리(Ferry)

○ 반나절 관광

-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 에덴동산 →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 11:00, 13:30)
→ 로즈가든(Rose Garden) → 지하수족관 →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시간 소요)
- 버스타워: 매일 09:00 - 16:00 1시간 간격으로 출발 (NZ\$ 36)
- 예약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3) 로토루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 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 간헐천 등이 유명함

- 당일 투어: 매일 08:00 오uckland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NZ\$135)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음
- 예약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와이토모 동굴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개뿔벌레가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주고 있음

- 당일투어: 매일 08:00에 오uckland Downtown Air Terminal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옴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관광NZ\$145)
- 예약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추천 당일 코스

로토루아	아그로돔 양쇼-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진흙열탕-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NZ\$105 어린이NZ\$89
베이오브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카우리 시계 박물관	어른NZ\$ 129 어린이NZ \$109
코로만델해안	템즈금광체험 투어 - 와카테테베이 - 엘가리무 베이 - 스론톤베이 - 타푸 - 코로만델 - 워터웍스	어른NZ\$129 어린이NZ\$109

추천 1박 2일 코스

로토루아/타우포 타조농장	타우포후카폭포-번지점프장-타우포호수-지열발전소-타조농장-아그로돔 양쇼- 와카 마오리 민속쇼-레드 우드 삼림욕- 가버먼트 가든-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NZ\$ 249 어린이NZ\$199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90 마일 비치	어른NZ\$259 어린이NZ\$229
코로만델	타이루아-조개잡이-Hot water Beach-위티항아-쿡스비치-크루즈탑승-기암절벽의 머큐리섬 투어- 코로만델-워터웍스-타푸-와이오무-와카타베이-스론톤베이-앵거리무베이- 템즈	어른NZ\$259 어린이NZ\$229

4)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음. 예약 및 문의 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됨

나. 남섬

1) 크라이스트처치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위이자 남 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0만 명이며 고딕 양식의 대성당, 웅장한 Saint Paul 등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원도시(Garden City)임

2) Mt. Cook

Southern Alps라고 불리는 3,767M의 Mt. Cook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 빙하(헬기 관광 가능)와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음

3) 퀸스타운(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으며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일부록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 한 것으로 명성이 높음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머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음.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 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글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음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함.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넛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음

4)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도시 Dunedin과 최남단의 도시 Invercargill 등의 관광지가 있음

- 한국인 여행사
 - 뉴질랜드 호주 투어 : 64-9)307-1234
 - 좋은 여행사 : 64-9)300-3720
 - Family 관광 : 64-9)625-2525
 - 레인보우 관광 : 64-9)377-1061
 - 하나투어 : 64-9)300-3040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함